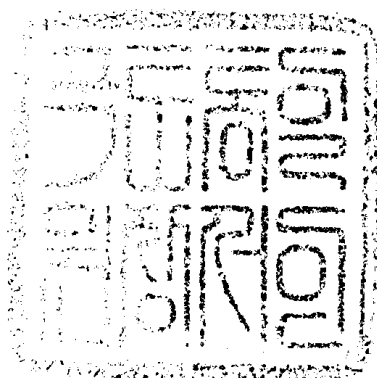


3255
37000

南北韓比較－社會文化

南北韓社會文化現況比較



Handwritten signature or mark below the seal.

Handwritten notes or signatures to the right of the seal.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社会文化的 比較方法	
가. 基本的 前提	3
나. 比較方法論	4
2. 南北韓社会構造의 比較	
가. 基本体制의 差異	7
나. 北韓社会의 異質的 特性	9
다. 社会的 統制	12
라. 階層構造의 硬直性	18
마. 人口構成	22
3. 南北韓文化構造의 比較	
가. 文化的 目標	25
나. 道德·倫理·禮儀凡節	28
다. 文化類型의 差異	31
4. 南北韓家族生活의 比較	
가. 家族觀	34
나. 家庭生活	35
다. 女性의 社会活動	38
라. 衣食住生活	40
마. 冠婚喪祭와 歲時風習	46
5. 南北韓生活環境의 比較	

가. 社会政策의 基調	51
나. 労働生活	53
다. 財産所有	56
라. 所得 및 生活水準	57
마. 趣味·娛樂	62
바. 宗 教	65
6. 南北韓文化生活的 比較	
가. 教 育	69
나. 言論·出版	80
다. 文学·芸術	83
라. 学 術	88
7. 南北韓社会問題의 比較	
가. 社会的 逸脱行爲	95
나. 社会的 不条理現象	100
다. 社会問題의 諸要因	101
8. 要約과 結言	

1. 社會文化의 比較方法

가. 基本的 前提

自由民主主義體制과 共產主義體制的 社會文化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는 「마르크스」主義 사회학에서 보는 사회문화관과 西万社會의 과학적 사회학에서 보는 社會文化觀 間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어느 입장도 각기 그 社會體制的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공통된 分析基準으로서 選擇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없다.

예컨대 文學 藝術에 있어서도 南北韓은 文芸活動의 目的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超階級的 純粹文化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지만 北韓에서는 모든 文化가 階級性과 革命性을 지녀야 된다고 主張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資料의 制約性이다. 韓國은 開放體制的이고 또 언론, 출판,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韓國關係資料의 交流는 대단히 활발하다. 오히려 過剩된 자료의 유출은 海外에서 보게 되면 特殊的인 것을 마치 一般的인 것으로 誤認할 위험성마저 다분히 있다.

반면에 北韓에 관한 資料는 지나치게 封鎖되어 있다. 그나마도 制限된 範圍內의 특정 자료는 모두 北韓의 一方的 宣傳物에 불과한 것들이다. 社會學的 측면에서는 특히 비공식적인 자료가 중요시

되는데 북한의 경우 이에 대한 수집가능성이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의 内面을 정확하게 分析·評價할 수 있는 資料를 입수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그 까닭을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은 다른 共產國家들과도 資料를 交換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둘째, 北韓을 訪問한 者에 대하여는 그 活動범위를 극도로 制限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할 수도 없고, 住民들과의 接觸은 더욱이 認定되지 않고,

셋째, 北韓社會에서는 居住移轉, 職業選擇, 旅行의 自由가 없으므로 설사 北韓地域에서 생활하였던 越南歸順者들도 제한된 자기주변의 생활체험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北韓의 統計數字에 대한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 人口動態만 보더라도 북한에서는 정확한 人口動態를 發表하지 않으며 經濟統計에 있어서도 部分的인 總額만 나타냈지 분석할 수 있는 세부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설사 資料가 입수되었다 하더라도 數量化가 困難하다든가 相互比較가 不可能한 資料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諸事實은 특히 計量的 分析에 있어서 커다란 困難을 야기시키고 있다.

나. 比較方法論

이와같이 南北韓社會文化現況의 比較에 있어서는 體制의 차이때

문에 比較「모델」내지 比較尺度를 마련하는 문제가 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困難性은 体制自体의 比較에서도 나타나지만 下位体系의 分野別 比較에 있어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南北韓의 社会文化를 比較 研究함에는 T. Parsons 의 社会体系均衡理論, R. Dahrendorf 의 社会葛藤理論, A. Etzioni 의 巨視社会学的 立場, 그리고 輻合理論등을 相互補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一般社会学的 分析 「모델」이 体制가 상이한 南北韓의 比較에 그대로 적합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 더우기 北韓에 관한 부문에 있어서는 비교결과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問題와 制約이 뒤따른다. 결국 이들 理論에 준거한 北韓社会의 現況分析에 대한 妥当性和 正確성이 의문시되는 위이다. 상이한 構造와 機能을 가진 南北韓의 社会文化現況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정확도에 있어서 더욱 신빙성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諸般制約性和 限界點을 극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들은 다음의 몇가지를 前提하고자 한다.

첫째, 社会文化現況의 比較에 있어서 이를 長期的인 眼目에 입각하여 分析하는 문제이다. 대체로 거시적이며 가치판단적인 요인이 많이 介在하는 研究에 있어서는 短期的인 것보다 長期的인 視野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측의 資料가 결핍되어 있

는 여건하에서 단기적인 예측과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둘째, 比較對象으로서 政治, 外交, 軍事 등 諸下位體制와의 相互關係에 관한 問題가 감안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相互比較方法에 있어서 政治, 外交, 經濟, 軍事 및 社會文化를 각각 완전 분리하지 않고 서로 補完하는 立場에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論上的 諸制約性和 限界點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도 자연히 類型論的인 記述의 方式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그것도 客觀的 妥當性에 준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單편적인 事實을 통해 類推된 圖式的이고 試圖的인 한 側面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 南北韓社會構造의 比較

가. 基本体制의 差異

해방 후 남북한사회는 각기 상당한 변모를 거듭하여 왔다. 해방전의 우리나라는 국가없는 民族, 국가없는 사회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방후에는 自主國家로서의 体制確立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가 재정비되어야 하는 民族歷史의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日帝植民地下的 韓半島는 이른바 前近代의 農耕社會를 주축으로 하는 전통사회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오랜 植民地統治때문에 일본적 요소가 사회의 표층부에 두껍게 깔려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二重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해방과 더불어 日帝殘滓를 불식하면서 동시에 前近代의 遺制를 近代化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6.25 동란까지는 美·蘇에 의한 남북분단정책으로 좌우익의 충돌과 투쟁이 과열화 되어 政治的 혼란이 극심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정비작업은 2차적인 것으로 들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진통기에 있어서 金日成괴뢰정권의 무모한 武力南侵은 결국 6.25의 民族的 慘變을 낳았고, 이로 인한 남북한관계의 異質化 性向은 더욱 촉진되었다.

지난 30餘年間的 한국사회는 한마디로 變動과 發展속에서의 自

己發見을 위한 정비작업에 여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50년대의 한국사회는 이식된 西歐的 價值體系의 土着化를 위해 진통을 겪었고 60년대는 현실과 遊離된 價值體系를 바로잡기 위해 規範體系와 報酬體系를 강화한 시기였으며 '70년대는 '60년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새로운 固有의 價值體系를 定立하려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새로운 價值體系를 定立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가의 期待와 社會成員들의 노력이 합치될 때에 비로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國民總和가 요구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며 그 根底에는 自由民主主義理念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指導理念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 즉 한국은 韓民族의 歷史的 背景과 傳統的 價值觀에 의거하여 自由民主主義體制를 그 基本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1972년 11월 20일 에 改正된 유신헌법에 의하면 그 前文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義舉 및 5·16 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적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건설함에 있어서"라고 前提하고 헌법 第1條에서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前文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

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向上을 기한다"라고 밝히고 있음으로써 한국사회는 「나」와 「우리」가 바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主体이며 主權을 가진 個體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고 平和指向的 民主國家임을 온 세계에 천명하였던 것이다.

나. 北韓社會의 異質的 特性

共產獨裁下의 북한사회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體制的 특수성을 띠고 있다. 個人에게는 북한 노동당에 의하여 代表되고 統制되는 전체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存在價值만이 인정되며,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강요당하는 전체주의적 一人獨裁 社會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전체주의의 一般的 特性은 ① 大衆統制의 手段으로서 폭력사용과 공포분위기 조성, ② 官製 「이데올로기」의 강요와 엄격한 思想統制, ③ 特定人 또는 少數集團에의 권력 집중과 우상화, ④ 중앙집권적 경제 체제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사회체제는 이러한 諸般要素들을 어떠한 전체주의 사회의 경우보다 더욱 徹底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지배층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이 없이 오직 일본의 軍國主義體制와 「스탈린」의 鐵拳獨裁體制下에서 訓練되었다는 데에 緣由하고 있다.

이와같이 공산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사회체제의 構造的 特性

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私有財産의 所有를 인정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 獨裁社會라는 점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946년 3월 「土地改革法令」 발표와 동시에 土地를 沒收하여 개인에게 無償分配하고, 그해 6월에는 「産業國有化法令」을 발표하여 생산수단의 國유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농민에게 분배한 土地는 1954년부터 협동농장을 조직하기 始作하면서 다시금 沒收되기 시작하였고 1958년까지 모든 농민은 협동농장에 강제로 가입되어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박탈 당하고 말았다. 개인상공업도 이 기간에 완전히 抹殺되어 북한주민은 생산도구의 구성밖에 못하는 한낱 노동력에 불과하게 된다. 북한은 1977년 4월 새로운 「土地法」을 채택하고 土地管理에 대한 黨的指導와 統制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로써 주민들의 예측성과 노예성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둘째, 그것은 金日成 主体思想과 黨的 唯一思想體系가 모든 價值를 支配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하나의 理想만이 公認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반대적 「이데올로기」가 許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는 政治, 經濟, 宗教 등 어느 국한된 영역이 아니고 인간행동의 全部를 規制하는 광범한 包括性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意志이며 누구나 이 원리에 복종토록 강제된다는 뜻이 된다.

북한에서는 唯一思想과 主体思想이 既存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를 보완하는 「이데올로기」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는 金日成에 의해 해석되고 規定지워진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唯一한 社会理想으로 適用된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는 「金日成이 생각하는데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라」는 口号아래 「首領의 敎示를 끝까지 忠誠으로 몸숨바쳐 貫徹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그의 「敎示」는 그 어떠한 法令이나 「党決定」에도 優先하는 絶對性과 無条件性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集團主義原則」에 준거한 통제적 조직사회라는 점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新憲法 第49條에는 社会的 특징을 規定한 条項이 명시되고 있다. 즉 「北韓에서 公民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서 라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를 떠난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全体와 個体の 利害는 언제나 一致되는 것임을 公式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新憲法 第68條에 의하면 「公民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發揚하여야 한다.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会와 人民의 利益, 조국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적 行動指針을 促求하고 있다.

이와같은 집단주의는 모든 주민이 組織속에 묶여져야 하며 党的 指令에 따라 一絲不亂한 劃一性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바로 共產主義的 人間의 행동특성인 것이다.

네째, 북한사회는 党性에 따른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즉 북한을

統治하고 있는 집단은 직업적 혁명분자로 구성된 「조선노동당」이며, 이러한 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국가주석」인 金日成 1人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200 만 黨員이 統治계급으로서의 特權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상으로나 사회적 機會면에 있어서 일반주민(被支配層)과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사회는 그 어떤 공산국가나 전시체제하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超軍國主義的 兵營社會를 이루고 있다. 즉,

① 모든 주민은 각종 조직에 종속되어 통제를 받고 있으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작업반체제는 군대식 編成모형에 따라 下向的 命令體系를 유지하고 있으며,

② 「全住民의 武裝化」라는 기치아래 正規軍을 제외하고도 70 만의 「붉은청년近衛隊」, 140 萬의 「勞農赤衛隊」(男 17 ~ 45 才, 女 17 ~ 30 才), 27 萬명의 「教導隊」(20 ~ 40 才 軍除隊者)가 조직되어 있으며 전학생을 軍事訓練에 동원(中學以上 兵器支給)하는 등, 북한사회는 兵營社會的 一色을 이루고 있다.

다. 社會的 統制

(1) 組織的 活動

국가사회는 각기 추구하고자 하는 文化的 目標과 동시에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적 수단을 가진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특정한 국가목표를 지향하여 나아가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통제가 가해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共産黨에 의한 주민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黨決定」이 法令보다 더 큰 구속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당에 의한 주민통제가 주로 사회단체와 행정기구에 의존하고 있다. 즉 一黨獨裁를 指向하는 통치체제를 구성하게 될 경우 당이 통치력의 核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당원인 피통치층에 대해서는 黨自体가 개개인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대중을 住居別, 職種別, 階層別로 조직화하여 이들 사회단체의 지도기관을 黨이 장악하고 이들로 하여금 黨과 대중과의 매개적 기능을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는 6才부터 65才(여자는 60才)까지 1개이상의 각종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組織生活을 해야 한다. (단, 「복잡한 계층」중 獨裁對象에 속하는 소외계층은 제외시킨다.) 이러한 각종 사회단체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6~13才는 소년단, 14~27才(본인희망으로 30才까지 연장가능)는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에 가입해야 하고, 직업별로는 노동자와 사무원을 비롯한 정신노동 종사자는 「職業同盟」, 協同農場員들은 「農業勤勞者同盟」에 소속되어야 하며 여성(17~55才)은 民主女性同盟에 망라된다. (表1)

따라서 20세의 여적공의 경우 「社勞青」, 「職業」, 「女盟」의 3개단체로부터 중첩적인 통제를 받게되고, 여기에 黨員일 경우 黨

구성원으로서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

<表 1> 社会团体的 종류와 규모 (1977 現在)

단 체	구 성 원 수 (万 명)
노 동 당	220
職 盟	220
社 勞 青	300
技術者專門家	100
少 年 団	350
農 盟	260
女 盟	260
学 生	560

* 북한 자료집 (통일원, 1978), p.967.

북한의 모든 사회단체들은 党的 傘下 前衛团体이며, 이처럼 개인 활동을 단체에 묶어 통제하는 것은 党的인 行動指導와 思想的 管理를 철저히 하고 동시에 有事時에는 사회동원 능력을 확보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2) 個人生活統制

개인생활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기본권과 관련되는 것은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一般的 原則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公民의 권리와 의무는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口號 밑에 주민의 公的·私的行動이 난폭하게 통제, 유린당해야 하는 양상이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생활에 대한 통제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일체의 생활여건을 북한 공산당이 장악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으면 삶을 이어갈 수 없게 하는 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식량배급제와 중요 일용품공급제를 실시하여 배치된 직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식량과 일용품을 求得할 수 없게 하고,

② 임의로 직업선택 및 직장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실직되어 생활수단을 잃게 되고, ③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이 허용되지 않으며 就業人에 한하여 그 직위에 따라 所定 戶數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

둘째, 각종 私生活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즉 「五戶担当制」와 「分組担当制」에 의한 감시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五戶担当制」는 1958 年末부터 북한의 全世代를 5 戶씩 나누어서 열성당원 1명을 배치하여 부부간의 애정문제를 포함한 가정생활 일체를 党的 指導라는 名目으로 감시하는 제도이다.

또 「分組担当制」는 직장안에서의 동료간의 일상언동이나 상하간의 태도등을 감시하여 密告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누가 분조담당원인지를 알 수 없도록 비밀리에 조직해 놓고 있다.

이로서 북한 주민들은 가정과 마을에서는 「5戶担当制」에 의하여, 그리고 직장에서는 「分組担当制」에 의한 감시속에서 타율적인 맹종적 생활만이 가능하게 조직화된 것이다.

세째, 북한은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반면 모든 주민들에게 金日成우상화학습, 각종행사에의 의무적 참가, 사상강습회 그리고 집단적 군중행동등의 형태로서 私生活의 영역을 광범하게 침범하고 있다. 예컨대, 75년부터는 대학교원들에게도 이른바 「金日成勞作만케이지 읽기운동」이 강요되어, 우선 우상화를 위한 政治學習에 열중하지 않으면 정기적인 검열시에 적발, 징벌을 받게 된다. 특히 1977년부터는 「金日成革命思想研究室」이라는 것을 전국 각지의 党,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과학 교육 보건기관, 군부대, 사회안전기관등 총 27,000여개를 설치 운영하고 각 단위 구성원들로 하여금 매주 1회 2시간의 「김일성우상화」강의와 매일 3시간의 학습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으며 週間에도 연구과제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3) 査察機構

國家마다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안녕질서와 公共福利를 위하여 사찰기구에 의한 内外의 反國家事犯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공산사회에서는 「少數에 의한 多數에 대한 獨裁」가 강제되기 때문에 사찰기구에 의한 주민감시와 통제는 독재정권의 일차적인 임무에 속하며 被治者가 아니라 統治者를 위하여, 公共福利

가 아닌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하여 중첩적 감시와 엄격한 주민통제가 실시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통제방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저하고 야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찰기구의 多元化, 즉 4重~5重의 감시조직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国家政治保衛部」, 「社会安全部」 등의 이름으로 주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한다.

둘째, 物証主義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拷問形式인 소위 「思想檢討」라는 名目으로 피의자에게 허위 자백을 조작 강요케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心理的 暴力을 일상화한다.

셋째, 북한 전주민에 대한 계층별 「成分調査事業」을 빈번히 실시한다. 1971년 이후에는 3大階層을 51개 階層으로 세분하여 이에 따르는 감시와 통제를 差等化하였다. 그리고, 사찰대상층에는 「特殊区域」에 강제 이주되어 평생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은 모든 범죄를 형사소송법상 증거중심주의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黨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제시하는 것조차 「反黨行爲」이며 「반혁명 세력」이라 하여 처단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唯一專制性을 여실히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라. 階層構造의 硬直性

계층구조 및 계급의 문제는 「마르크스」주의가 無階級社會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구조를 階級的 對立이라는 관점에서 分析·批判하고 있는 이상, 특히 남북한사회구조 비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영역이다. 그런데 북한사회의 구조·변동가운데 그들이 추구하는 「平等」이데올로기(또는 文化的 目標)와 가장 상반되는 현실적 모순은 바로 이 계층화현상의 硬直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계층현상은 社會的 報酬의 자연스러운 分配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計劃的인 사회주의적 階級政策을 통해서 급격하게 조작된 정치수단이며 정치적 지배층에 의해서 의도된 통제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각종 저항적 요소를 억압하고 제거하는 權力統制의 機制로서 작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는 계층구조의 變革作業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바로 住民統制의 系列化를 뜻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신헌법 第6條에서 「북한은 계급적 對立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라고 규정하고 마치 北韓社會에서는 계층현상이 없고, 또 계급간의 대립도 전혀없는 “理想社會”가 성취된 것처럼 선동한다. 그러나 북한사회현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말하는 자본가계층은 없다고 할지라도 支配와 被支配의 관계를 固着化시키려는 새로운 계층서열의

구조가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있다.

政治的 側面에서 따진다면 오히려 평등사회를 표방하는 북한공산 사회안에서 더 큰 階層差別과 지역간의 격차 그리고 직업간의 層 化가 현실적인 사실로서 硬直化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도 이미 「아시아」의 전통적인 계급구조는 소멸되었다. 8.15 해방이후 土地改革에 의한 土地再分配 政策으로 과거의 지주계급이 없어졌으며 국민경제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 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유민주사회에 있어서 階層은 그것이 사회 의 유능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통로로서, 또 能率上昇의 장치로 서 기능한다는에서 그 存在의 의의를 두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남북한의 계층구조상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구조는 開放的 계층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所得水準에 따라 区分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 職業的인 관계 등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은 당사자들의 創意的 努力如何에 따라 자유로이 移動된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구조는 의도적으로 통제된 身分制的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계층상승의 통로는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歸屬的인 特性, 즉 「出身成分」과 가족의 「政治的 信任度」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다음으로 個人의 政治的 表徵과 實務的 表徵, 그리고 투쟁경력 등이 고려된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核心分子」, 「基本階層」, 「複雜

한 群衆」으로 3大分함으로써 비교적 단순한 계층서열이 제도화되어 있고 組織에서의 地位는 바로 사회적 지위와 同一視된다.

북한 「社会安全部」 지속조사기관인 소위 「620구루빠」가 북한 전주민에 대한 成分審査를 1971년초에 종합한 북한 주민들의 成分別 構成, 즉 계층구조는 <表 2>와 같이 集計되고 있다.

<表 2> 階 層 構 造

階 層 別	世 帯 數	人 口 構 成
核 心 階 層	약 87 만세대	27 %
基 本 階 層 (動搖階層)	약 70 만세대	22 %
複 雜 한 群 衆 (敵對階層)	약 243 만세대	51 %

資料：北韓全書(極東問題研究所, 1974)

둘째, 한국에서는 서민층의 생활향상과 재산형성을 위한 중점시책을 펴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사상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보는 복잡한 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세분하여 監視와 彈圧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적대 계층을 다시 細分化하여

① 「포섭대상」, 이들은 政治思想教育을 強化하여 세뇌공작으로 개조시키며,

② 「감시대상」, 이들은 일반군중에게 공개하여 집단감시케 하고 있으며,

③ 「독재대상」에 대하여는 군중과 분리시켜 特殊地域에만 거주케 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간의 엄격한 差等的 機會賦与와 관리는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세력이 집단화되면 「反金日成 体制」로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실정이다.

세제, 직업통계에 의한 계층분류 <表3>을 보면 한국에서는 自由業과 手工業에 이르기까지 多岐多様하나 북한에서는 勞動者, 事務員, 協同農場員, 軍人으로 한정, 구별되며 각직종간의 노임의 격차가 크고 동일한 직종내에서도 개개인의 정치적 信任度에서 비롯되는 역할배분에 따라 보수상의 偏差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表3> 職能別 人口構成

한 국			북 한		
区 分	1963	1977	区 分	1946	1965
전문·기술·행정관리직	3.2	4.2	사 무 원	6.2	15.6
서비스종사자	5.4	6.7	기 업 인	0.2	-
사무직	3.6	7.6	상 인	3.3	-
판매직	10.0	12.3	協 農 員	-	43.2
농림업및유사종사자	60.4	39.9	개 인 농	74.1	-
어업·수렵업	2.5	1.1	노 동 자	12.5	41.2
기타(생산종사자, 운수장비, 단순노동자등)	15.0	26.9	수 공 업 자	1.5	-
			기 타	2.2	-

자료: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 한국통계년감(경제기획원) 참조작성: 조선중앙년감(1965).

* 북한은 1965年以後 비슷한 양상임.

끝으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계층구조와 굳이 비교한다면 上層이 政治的 高位幹部와 黨員이며 中層이 基本階級이고 下層이 「복잡한 群衆」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中間階級을 모두 勞動階級化하는 계급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중간계급이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을 상호 견제하고 조정하는 主導勢力이 되고 있다. 남북한의 대립은 사회구조적으로 보면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대립이며 중간계급의 福祉社会的 志向과 노동계급의 共產社会的 志向과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人口構成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년 현재 韓國의 人口는 36,440千名이고 北韓이 16,564千名으로 推計되고 있다.

性別構成을 보면 한국은 남자가 많으나 북한은 여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인구증가율은 한국이 1.6%인데 비해 북한은 2.4%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地域別 人口分布面에서 보면 한국이 북한에 비해 都市集中化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야기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고 주거이전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북한은 政策目標에 따라 일방적으로 직업·거주지를 지정, 배치함으로써 인구의 도시로의 移動을 抑制할 수 있으며, 또한 軍需産業의 지방분산에

따른 인구가동에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表 4〉 南北韓 人口構成

区 分	韓 国	北 韓	備 考
總人口(千名)	36,440	16,564	1977년推計
性 比(男)	101	98	1976년推計
增 加 率	1.61%	2.46%	
分 都 市	45.8%	33.4%(47.3%)	
布 農 村	54.2%	66.6%(52.7%)	
人 口 密 度	364名/km ²	132名/km ²	
產 農 水 產	44.6%	40.9%	북한 1972년
業 鉞 工 業	21.9%	36.8%	한국 1976년推計
別 其 他	33.5%	22.4%	

資料：남북한力量比較(국토통일원, 1975), 主要經濟指標(경제기획원, 1978) 및 북한요람(1977) p.113.

産業別人口構成에 있어서 남북한은 다같이 농수산부문에 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나 광공업부문에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경영합리화등 점차 資本集約的인 산업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며, 북한은 이와 반대로 기술의 낙후와 생산시설의 노후화로 勞動集約的인 생산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등 기타 부분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높은 것은
住民厚生 및 사회복지시설에 보다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 南北韓文化構造의 比較

가. 文化的 目標

남북한의 異質化는 文化構造와 精神생활에 있어서도 동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사물에 대한 價值기준과 精神적 생활내용을 달리하기에 이르렀다.

人類歷史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福祉의 伸張을 위한 투쟁인 것이며, 이같은 투쟁을 통해 肇興한 것이 곧 人類文化이고, 인류문화의 축적이 인류역사의 發展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韓半島의 보편화된 歷史觀인 동시에 文化적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민은 이와 같은 文化的 目標 위에 人本主義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며 또한 무엇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判斷하는 기본적인 가치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사회는 外部로 부터 注入된 唯物史觀을 教條적으로 신봉하면서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계급투쟁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규정한 「共産黨宣言」(Marx and Engels, The Communist Manifesto, 1848. 2)의 前提下에 物質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체계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의 가치체계 및 文化的 目標의 차이점은 여러가지 面에서 대조적인 양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한다.

첫째, 人間의 尊嚴性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남·북한은 判異하다. 한국에서는 모든 人間활동이 人間을 중심으로 人間이 가장 존귀하다는 目的論的 人間觀에서 비롯된다면 북한에서의 人間활동은 개인은 전체주의적 사회구조의 한 構成分子로서, 조직사회의 한 細胞로서 부과된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계론적 人間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階級鬭爭과 혁명의 성과를 위하여 개인은 언제라도 희생되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삶이라고 說教되고 있다.

둘째, 人間정신의 能動性和 創造性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한국에서는 人間의 정신력이 물질적 諸條件까지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창조적 힘과 개척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人間의 정신력을 새로운 價值創造의 主体라고 본다면, 북한에서는 人間의 정신을 물질의 反映 내지는 模写로 보기 때문에 그 能動性和 創造性은 소위 「黨의 決定」 혹은 「首領의 敎示」에 충실하려는 노력에 의해서만 發揮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가와 민족에 대한 認識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나」와 「國家」 또는 「民族」은 不可分的 관계이며 運命共同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북한에서는 국가와 민족은 소멸, 즉 有限的인 것이나, 공산주의와 공산당은 無限的인 것으로 믿도록 강요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북한사회의 文化的 目標로서의 공산주의 「이데

올로기」가 지닌 특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산주의란 地域的 또는 民族的 特性에 따라 이를 해석하고 適用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날의 북한 공산주의는 소련, 中共 및 東歐諸國의 공산주의 양상과는 근본적인 데서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첫째, 북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극히 教條的이다. 즉,

① 平和共存路線을 修正主義라고 비난하면서 「戰爭不可避論」과 「暴力革命論」을 고집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아직도 盲信하면서 민족과 국가의 이익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데, 「主体思想」이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려는 조작이며,

②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으면서 「資本主義 崩壞論」을 계속 주장하고 소련 및 東歐의 공산권에서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生産單位에 대한 「利子 및 利潤方式」까지도 외면하고 있으며,

③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他者로부터 注入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주장을 그대로 본받아 「金日成思想一色化運動」을 合理化하고 있으며,

④ 「마르크스·레닌」주의, 統一戰線戰略 및 戰術을 그대로 신봉하면서 한반도전역의 共產化實現에 광분하고 있다.

둘째, 북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獨斷的이다.

즉,

① 「階級獨裁論」을 「一人獨裁의 合理化」의 구실로 삼고 있고, 金日成一家의 「族閥政治」를 「民主政治」라고 조작하여 선동하고 있으며,

② 基本權 制限과 주민통제를 「階級政策」으로 선전하고 있는가 하면, 소위 「주체사상」을 「가장 정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金日成 개인우상화는 스탈린시대의 前近代的 유물로 공산권내에서도 크게 비난받고 있다.

세째, 북괴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實踐過程에서 極左冒險主義에 의거하고 있다. 즉,

① 국제적 평화조류를 외면하고 무력과 폭력에 의한 赤化統一路線을 고집하고,

② 소위 「4대군사로선」이란 슬로건 밑에 전쟁준비에 총력을 집중하여 왔는가 하면,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남침땅굴을 20여개나 파내려 왔으며,

③ 「게릴라」 요원을 訓練시켜 세계 각국에 침투시킴으로써 국제평화에 도전하고 있다.

나. 道德·倫理·禮儀凡節

남북한은 道德, 倫理에 대한 概念의 해석과 이를 적용하는 측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哲学辞典」에 의하면 道德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 및 사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원칙과 規範의 總體」라고 定義되고 있다.

그러나 그 解釈과 意義에 대하여 「道德은 사회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사회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하여 階級社会에서는 반드시 階級的 성격을 띤다」(上掲書)라고 밝힘으로써 道德의 可變性和 階級性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人類歷史를 階級鬭爭史로 보는 唯物史觀에 부합되는 행동, 예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자식의 행위가 「革命的 利益」을 위한 계급투쟁의 결과라면 그것은 道德的이고 倫理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소위 「공산주의 도덕교양」에서는 道德을 계급투쟁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絶對理念」, 「人間本性」 등에서 추출된 순수한 도덕관과 도덕일반을 주장하는 道德論에 반대하면서 이를 反動的이며, 反社会的인 낡은 도덕이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북괴는 道德을 전적으로 공산주의 교양에 결부시키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道德概念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變質이 불가피한 것이다.

첫째, 공산주의 도덕교양은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을 강조한다. 집단주의 사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個人主義, 利己主義에 대립되는 사상이며 이것만이 긍정적인 도덕윤리 사상이

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 정신의 강요는 결과적으로 自我意識을 버리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북괴는 주민들을 사회 및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부속품으로 자신을 기계화 내지는 예속화시킴으로써 黨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自動的 人間型으로 주조하게 되는데, 만약 주민들이 집단에 예속되지 않고 獨自的인 思考와 행동을 취한다면, 소위 「革命精神」이 해이될 뿐만 아니라, 自由主義 思想의 浸潤을 허용하는 틈을 주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보다 철저한 공산사상으로 武裝強化토록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둘째, 그것은 「社會主義·愛國主義」敎養이다. 즉 勤勞大衆에게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勞動愛護精神」이라는 새로운 道德概念을 내세워, 공산사회에서는 노동의 결과가 자기 자신과 전체인민대중에게 되돌아 온다고 선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에 의욕적으로 참가토록 강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산주의 도덕교양의 실시로 인하여 주민들의 전통적 윤리도덕 기준이 변질되고 있다.

다. 文化類型의 差異

文化는 構造的 分化形式에 따라 理念文化, 行動文化, 用具文化로 3分될 수가 있다. 理念文化는 사회성장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價值志向의 文化이고 行動文化는 사람이 따르고 있는 規範이나 慣習의 文化이며, 用具文化는 생활용품, 시설 등의 생활수단에 관련된 文化이다. 이와같이 文化의 類型을 3分類하고 類型論的 立場에서 보면 남북한간에 상당한 異質性이 內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첫째, 북한의 理念文化는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金日成的 해석을 根幹으로 하고 있다. 唯一思想, 主体思想, 集團主義,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의 革命路線은 韓國의 近代化思想, 福祉社會觀,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점진적 改良主義와 매우 對照的이다. 북한에서는 집단목표의 쟁취가 중요시 되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개인의 반영과 행복이 중요시 된다.

북한의 革命路線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에서는 維新體制를 확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같은 理念文化에서의 차이는 相互妥協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 속에서도 공통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곧 民族主義化의 경향이다. 물론 雙方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표면적인 면에서 본다면 文化遺産의 愛護, 민족적 긍지의 提高, 主体的 力量의 양양, 한국적 準拠基

準의 확립 등에서 공통의 바탕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行動文化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면에서 양자간에 유사점이 더욱 많게 나타나고 있다. 田園的 情感, 共同體的 紐帶, 가정에서의 전통적 인간관계, 相扶相助의 慣習, 序列主義, 對人的 情誼性, 歸屬性 등에서는 남북한이 모두 在來的인 한국적 특성을 共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것이 오직 金日成을 頂點으로 한 집단주의적 조직생활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데 대해서 한국에서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活用되고 있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用具文化에 있어서는 남북한 共히 현대적 기계문명의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技術이나 機械는 超 「이데올로기」的인 것이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用具文化의 차이는 資本主義 對 社會主義라는 생산양식의 차이를 제외하고서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민족적 본질을 具現하는 衣食住의 절대적 형식이 바뀌지 않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는 적다. 김치와 온돌과 한복은 한국 고유의 것이며, 그것은 민족이 생존하는 限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物量的 豊요성이라든가 技術水準에 있어서의 差異는 앞으로 더욱 벌어져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남북한사회의 체계적 兩極性은 表層文化에서는 異質化를 進行시키고 있으나 深層文化에서는 變容이 비교적 적다는 側面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말투, 인간관계, 民俗 등에서 表層的 變化는 일어나고 있으나 深層的인 變化에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

음을 뜻한다. 이것은 물론 現時点에서의 현상이고 앞으로 이러한 共通性이 어느 시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혹은 어떻게 異質化될 것인가 하는 것은 断定하기 매우 곤란한 것이다.

4. 南北韓 家族生活의 比較

가. 家族觀

한국사회에 있어서 家族은 血緣관계 내지는 사회적 承認관계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私生活을 보호하는 신성불가침의 城廓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私生活을 보란차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은 法律로써 보호되며 정부당국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家族生活은 우리 민족고유의 美風良俗에 따라 가족원들의 애정과 존경, 信賴와 協同으로 이루어지며 불법적인 외부의 干涉이 일체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가족관에 비해서 북한의 가족(“家庭”이란 말을 씀)은 특이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공산주의 사회에서는 家庭의 獨立性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변질되어 가족은 血肉의 情이 똥기는 따뜻한 보금자리로서가 아니라 각기 소속 사회단체를 달리하는 근로자들의 臨時合宿所와 같은 인상을 풍겨 주고 있다.

우선 家族의 概念부터가 한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북한의 「朝鮮家族法」 第1條는 「가족은 社會主義 革命理論의 實習場이며 生産의 最低單位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家族概念, 즉 「家族은 血緣을 中心으로 하는 애정의 結合體이며 사회문화의 歷史的 傳承機關으로서 모든 사회활동의 根本的 基底이고 발전의 主体的 原動力이다」라는 것과는 본질적 차이를 나타낸다.

북한사회에서는 그 가족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정을 資本主義的 遺物로 敵對視하고, 血緣集團에의 귀속의식을 封建的 思考方式으로 排斥하고, 전통문화계승을 保守的 思考觀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은 하나의 사회적 조직으로서, 그들의 「이데올로기」 實現을 위한 目的集團으로 밖에 認定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족의 개념은 북한헌법에서 명시된 바와같이 「社會主義 革命의 實習場」이며 「生産의 基本單位」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무관한 一切의 전통적 습성은 타파되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家族制度, 家族生活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나. 家庭生活

한국의 家庭形態는 오랫동안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家父長的 大家族制度를 지켜 왔으며 家長의 절대적 권위에 의하여 家事가 처리되고 孝의 원리에 의하여 가족질서가 확립되는 權威主義的 家族이다.

그러나 1960년대이후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近代化함에 따라 가족의 크기도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가 하면 특히 가족의 機能面에

서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過去의 한국가족은 정치·경제·종교·교육·오락의 모든 機能을 담당했었으나 現代家族은 産業化와 더불어 그 기능을 점점 축소시켜서 다른 기관에 그 일을 위임하고 있다. 예컨대 住居와 職場의 分離는 가족으로부터 物的生産의 기능을 經濟에 移讓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교육은 학교에, 오락은 상업시설에, 보호와 통제는 국가에 위임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리하여 家族生活은 性的充足 및 性的秩序維持, 了女出産 및 結婚의 기능, 家族員의 情緒的安定, 家族員의 生活保障 등의 原初的인 기능과 더불어 애정의 중심에 가족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생활의 변화는 대가족제도를 浸蝕하여 小家族化, 또는 核家族의 形態와 機能을 助長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가정의례준칙의 시행으로 대가족제도의 構造改善이 더욱 加速化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의 家族은 외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構造와 기능에 있어서 대가족제의 殘滓를 많이 지니고 있으며, 가정이 社会心理的 結合체로서 혹은 社会保障制度의 기능까지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북한의 가정생활과는 큰 差異點을 나타내게 하였다.

그것은 첫째, 倫理道德의 基準이 달라진 점이다. 한국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年長者를 존경하고, 子女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寬容을 베풀며, 家庭의 화목과 질서를

존중하듯이 사회의 紀綱을 귀중히 여기는 氣風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부모와 子息들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경 및 信賴는 낡은 封建的 慣習이며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소위 「党的原則」과 「首領의 敎示」에 違背되는 行동을 하였을 때는 신랄하게 批判하고 소속단체의 간부에게 보고하는 것이 子女로서 지켜야 할 道德的 規範처럼 强요되고 있다.

이러한 年長輩에 대한 존경하는 尺度도 그가 얼마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기여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둘째, 그것은 社会生活의 基盤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즉 가정생활의 延長으로서의 社会생활이라는 한국의 觀念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社会생활의 한 細胞로서의 가정생활만이 인정되고 있다.

셋째, 그것은 자녀에 대한 認識과 育兒問題에 대하여 이해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子息에 대한 育兒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神聖한 부모의 責務로 알고 있으며 모성애는 어머니와 子息間의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세살적 버릇을 여든까지」 끌고 가기 위해 育兒의 敎育을 党에서 맡아 党에 忠實한 「붉은 戰士」로 키워야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린이들은 부모의 사랑속에 자란 것이 아니고 「党和 首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났다」고 믿고 있으며, 金日成을 「아버이」라고 부르는 대신 親父母는 오히려 동무처럼 대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樣相이다.

이와같이 북한은 子女養育, 父母尊敬, 祖上崇拜 등의 관습을 封建的 殘滓라고 규정하고 전통적 가족단위의 생활양식을 종식시켰다. 즉 가정생활이 주민생활의 중심점이 되지않고 있으며 유아는 託兒所, 어린아이는 幼稚園, 少年은 少年團, 青年은 社勞靑, 成人은 職業同盟이나 女性同盟이 각각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가족관념과 가족단위생활을 排除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가족은 대집단의 한 部分構成체로서 대집단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한 단위조직으로만 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 女性의 社會活動

해방이후 남북한 가족의 內的 生活面에서 여성의 사회적 기능과 位置變化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한국여성의 경우를 보면,

첫째, 役割担当面에서 종래에 있어서 부녀자는 家事만을 돌보는 것을 美徳으로 생각하고 남자들은 바깥일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役割配分은 사회변동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 부인도 직장을 가져도 좋으며 남편도 직장 뿐만 아니라 家事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價值觀이 점차 퍼져가고 있다.

둘째, 아버지의 위치가 크게 변하였다. 權力관계의 면에서 婦女子의 地位가 向上됨으로 인하여 남편과의 평등한 권력관계가 이룩되고 있다. 특히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가정의 전통적 구속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女性運動의 대두이다. 즉 남녀평등의 생활화를 위한 여성층의 요구가 강렬해진 것이다. 여성들은 가정 밖의 문제에도 관심을 돌려 教育, 就業, 報酬, 기타 法律的 條件에 있어서의 평등화를 회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父와 子의 권력관계도 점차 개선되어 非權威的 關係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서 북한여성의 사회적 역할변화는 더욱 특징적 양상을 띤다.

즉, 집단주의 사회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은 伝來的인 한국의 家族主義的 制度를 가리켜 封建的이고 공산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 단정하고 사회주의적 國家統制經濟의 실현을 위하여는 旧習인 가족주의의 타파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전제위에 이의 消滅을 企圖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해방직후 북한 공산집단의 당면과제로서는 ①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打破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가족」을 발전시킴으로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강요하는 일이며, ② 가족의 기능과 構造를 빈질시키는 반면에 이에 代身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相對的으로 「上昇」시키주는 개혁이었다.

이렇게 하여 1946년 7월 여성의 社會進出이라는 명목밑에 「男女平等權」 法令을 公布, 여성노동자원의 최대이용을 制度化하였고, 1947년에는 우리민족의 전통적 가족단위를 규정한 戶籍制度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제도」를 강행함으로써 血緣關係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또한 1958년 7월 「人民經濟部門에 여성들을 더욱 引入시킬데 대하여」라는 內閣決定의 채택으로 교육 및 보건부문에서

는 平均 30才以上の 사람만 근무토록하는 대신 30才 이하의 젊은 여성으로 하여금 漁船團의 선원, 탄광광부, 교사포사수, 담프트럭 운전사 등 중노동부문에 까지 동원케 하고 있는가 하면 소위 「五戶担当制」라는 이름으로 非人道的인 私生活의 干涉까지 자행함으로써 家長을 중심으로 한 家族의 단합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이른바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口實을 내세워 여성을 노력동원에 참여시킴으로써 주부들로 하여금 家事에 몰두할 수 없게 하고, 또 家族相互間 또는 이웃간의 相互監視制度를 실시하여 家族不信, 이웃不信의 風潮를 人爲的으로 조작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붉은 大家庭」을 實現시키고자 1,000 세대이상의 「밥」을 지을 수 있는 「밥工場」을 도시의 洞單位別로 지어 놓고 住民들이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食事準備等 家事로 因해 귀중한 노동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이밖에도 職場單位로 託兒所를 설치·運營하고 여성노동력의 최대한의 착취를 의도하고 있다.

라. 衣食住生活

남북한의 衣食住生活은 한반도의 자연적 환경이 同質性을 띠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다른 側面에 比해서 비교적 異質化現象이

그만큼 좁혀 질지도 모르겠으나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差異와 經濟政策의 基本路線은 여기서도 양자간의 차이를 深化시키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정책의 차이가 곧 의식주생활에 反映되고, 나아가 남북한의 의식주생활양식에 있어서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된 까닭이다.

남북한의 의식주생활에 있어서 특징은 다음과 같이 比較된다.

(1) 食生活

全体的으로 보아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食생활이 잘 保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一般 食生活은 생활의 근대화와 함께 量的인 面과 더불어 質的인 面에서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새마을 운동의 推進으로 더욱 효과적인 改革이 自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食생활면에서도 크게 뒤지고 있다. 북한은 食생활에 있어서 아직까지 攝生為主이며 量的 充足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배급제도때문에 각자가 要求하는 개인소비의 絶對量을 충족하지 못하며 또한 食性和 嗜好에 맞는 食생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不足分の 食糧을 補充할 길도 없다. (表 5 참조)

북괴는 1957년 11月 內閣決定 96호 및 102호로 「食糧販賣를 国家的 唯一體系로 함에 대하여」가 발표되면서 食糧의 배급제도만을 실시하게 되었다.

식량배급은 有償으로서 対象者의 身分과 職責, 배급대상지역, 배급시기 등에 따라 相異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表 5> 1 日 食 糧 配 給 量

대 상	배 급 량 (g)	비 율 (백미 : 잡곡)
당간부 · 고급관리	800	8 : 2
군인 · 사회안전원	750	5 : 5
대학교원 · 고급기술자	700	5 : 5
중노동자 · 광산노동자	750	3 : 7
일반노동자 · 사무원	600	3 : 7
학 생	600 (대학, 전문학교)	
	500 (高 · 中)	3 : 7
	400 (인민학교)	
부 양 가 족	300	3 : 7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73) 및 북한요람 (1977).

주 : 백미는 현미를 말하며 잡곡에는 옥쌀 (옥수수),薯類 등이 포함되고 배급량은 곧 배급기준이며 유상구입이다.

따라서 배급량을 초과해서 購入할 수도 없으며 名節, 祭祀, 結婚式 등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追加配給도 없다.

농민 (협동농장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말 「決算分配」에서 現物分配中 가족의 1년분 식량 (배급기준량) 이 외는 全量収買 (供出形式)해 간다.

이와 같이 북괴가 식량배급제를 실시한 것은 不足한 식량사정하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勞力戰線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造成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充當함은 물론 이를 통해 주민통제를 강화하려는 방법으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이와 동시에 1959년부터는 食糧統制手段으로 糧券制度까지 실시하고 있다. 糧券(현재 200g으로 규정)은 公務出張, 개인여행을 할 때나 병원입원시와 군인의 휴가기간중 여관과 식당에서 사용된다.

(2) 衣生活

衣生活에 있어서 衣裳의 형태를 보면, 한국은 활동에 편리한 洋服의 착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농촌의 부녀자나 年老한 노인층은 아직도 한복을 즐겨 입는다. 그리고 도시·농촌할 것 없이 名節에는 대부분 다양하고 개성에 맞는 한복을 많이 입게 된다.

북한에서는 통상 勤務服(作業服)에 依存하고 있다. 한복에 있어서도 古典美의 애호보다는 다분히 政治的 經濟的 目的에서 추구되는 면이 강하다.

黨員과 事務員은 남자의 경우 「테크」복이 「유니폼」化되어 있고 여자의 경우 흰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많이 입고 있다. 또한 도시나 농촌에 있어서 치마 저고리의 色調는 單純化·劃一化되어 있다.

그리고 衣類의 需給面에 있어서 북한은 특히 綿織物의 絶對量이 부족한 실정이고 輕工業製品에 대한 高物價政策으로 말미암아 의류

는 勞賃에 비해 高價이기 때문에 求得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規格화된 기본작업복과 內衣정도는 季節에 따라 支給되고 있으며 또 다소 廉價로 제공된다. 그러나 勞動에 基本的으로 필요한 衣類以外的 出入服(신사복) 등은 高位層이나 특수한 職業層 以外에는 價格上으로도 입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특히 高級衣類의 구입에 대한 통제정책은 사실상 일반주민들의 衣生活 劃一化를 불가피하게 한다. <表8>, <表9>에서 나타난 주요물가시세와 職業別 임금실태를 對比시켜 보면 북한주민들의 衣生活樣態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3) 住生活

住宅은 인간생활의 안식처로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子女를 양육하는 작은 사회를 이룬다.

먼저 住生活樣式에 있어서 한국의 주거양식은 서양적인 文化生活과 東洋的인 정서생활의 調和라는데 기본을 두고 改善 發展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인생활에 적합하고 취향과 개성에 따라 다양한 選擇性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建物의 個人所有도 또한 個人建築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條件下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에 알맞는 設計는 더우기 있을 수 없다. 다만 階層과 職位에 따라 規格화된 各급 등급의 獨立家屋, 또는 아파트를 賃貸形式으로 割當받는다. <表6> 따라서 북한의 住生活 樣式은 집단거주 중심의 아파트型, 또는 연립주택형의 집단주의적인 生活樣式만이 인정되고 있으며,

文化生活이란 전혀 고려되지 않고 生活空間도 共同管理일 수 밖에 없다.

<表 6> 북한 사회계층별 주택사정

구 분	가 옥 구 조	입 주 대 상 자
독립식 고급주택	단층 또는 2층, 고급전채사 용, 정원시설, 냉온방장치, 수 세식변소, 교통편 양호	○ 黨 副部長級 以上 ○ 政務院 副部長(次官級) 以上
신 형 아 파트	방 2 개 이상, 목욕탕, 수세식 변소, 베란다, 냉온방시설	○ 중앙당 과장급이상 ○ 정무원 국장급이상 ○ 대학교수, 문예인간부
중 급 독립주택	구식독립가옥, 방 2 개, 부엌 1	○ 중앙기관 지도원급이상 ○ 주요기업체 간부
일 반 아 파트	방 1, 부엌 1, 마루방 1, 공동 변소	○ 일반노동자 및 사무원 (전체가옥의 30%정도)
집 단 공영주택	방 1, 부엌 1 (상하수도시설 不備)	○ 말단근로자
旧 屋	방 2 ~ 3 개, 기존구옥, 보수상 태 불량	○ 말단근로대중
농촌주택	소위 「文化住宅」: 중급 독 립주택구조와 비슷	○ 里級幹部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사회문화 계량적 비교, 1975;
북한전서(中), pp.201 ~ 2 참조 작성.

농촌의 경우에도 집단농장의 形態에 따라 住居의 양식도 아파트化, 聯立化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住生活은 인간적 삶의 空間이라기 보다는 舍宿所와 같은 특색을 지니게 되고 따라서 한국적 특색인 정서생활의 根拠地라는 의미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住生活樣式은 결국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收容함으로써 이들의 일거일동을 黨에서 지휘 통제하는데 容易하도록 하며 도시풍경을 규격화하고 그러한 도시환경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思考마저도 규격화하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住宅의 不足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대단한 실정이다.

마. 冠婚喪祭와 歲時風習

冠婚喪祭란 한 인간이 출생하여 삶을 營為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경과하는 과정중에 중요한 관문에서 치르는 通過儀式인 것이다. 이는 사회구조적 성격에 따라 각기 특유한 형태와 절차를 취하면서 社會構成員들의 團合과 活氣, 그리고 미래의 꿈을 북돋아 주는 기능을 한다.

해방이후 남북한은 다같이 시대변천에 따라 옛 생활양식이 많이 변했고 美風良俗의 개념도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본정신과 本質的인 내용이 계승되고 있는가의 與否가 민족사적 正統性和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면에서 남북한은 큰 차이

가 있다.

한국에서는 冠婚喪祭의 形式과 절차에 대한 간소화는 있었으나 그 정신과 본질은 그대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는 이 分野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에서는 冠婚喪祭를 포함하는 모든 民俗과 생활관습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的 性格의 사회주의적 내용과 民族的 形式」이란 구실아래 전통적인 冠婚喪祭儀式을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다.

1955 년에서 1960 년 사이에 冠婚喪祭 簡素化運動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의식을 사회적 要式行爲에 그치게 하였다. 그 實態를 살펴 보면,

첫째로, 婚禮에 있어서 북한은 한국사회처럼 남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配偶者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속단체나 직장의 細胞黨 委員長에게 事前 승인을 받아야 한다. 結婚 自体를 남녀간의 애정보다는 사회주의적 革命戰士間의 統合이라는 점에서 「붉은 革命家庭」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結婚基準을 革命力量強化에 두고 있다.

따라서 配偶者 선택에 있어서도 党性 出身成分, 직업과 관련하여

제한조건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党幹部, 軍官, 航空士 등의 結婚은 党의 특별한 통제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결혼연령까지도 党에서 임의로 통제하고 있다.

1976년 7월 政務院決定에 의하여 남자 32才, 여자 28才가 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그리고 結婚儀式에 있어서 축하객을 30名이내로 제한하여 「金日成초상화」를 걸어놓고 主禮가 「革命家庭의 탄생」과 「党과 金日成에 대한 忠誠」을 맹서하는 節次에 그치고 있다.

둘째, 葬禮에 있어서 남북한은 장례를 치르는 사회적 인식과 그 근본정신이 다르다. 북한에 있어서의 장례는 원칙적으로 인간으로서의 利用價值가 끝나고 노동력이 없어진 物體를 처리하는 절차로 看做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럼 故人을 哀悼하고 명복을 빌기 보다는 하나의 주검을 매장하는 사무적인 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의식절차를 극히 簡素化하여 1日葬을 원칙으로 하고 장례차를 賃貸하거나 職場, 協同農場의 트럭 또는 牛車를 빌려 시체를 공동묘지로 운반하거나, 도시의 경우 便宜協同組合의 장례부가

제공하는 공동묘지에 매장하거나 火葬해 버린다.

세째, 祭禮에 있어서도 전통적 祭禮는 迷信으로 看做할 뿐만 아니라 祖上崇拜를 復古主義의 병폐,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무시되었다. 그대신 祭祀를 통하여 사교육의 效果를 시도하고 있으며 祭日은 故人의 생존시 혁명업적에 대한 비판의 기회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밖에도 冠禮는 흔적조차 없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基本構造에서 冠婚喪祭가 重視되고 그 자체를 美風良俗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이를 復古主義의 경향이라던가 봉건적 잔재라고 규정하여 抹殺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으로 名節 역시 북한에서는 歲時風習 自体를 배격하는 입장이다.

그들은 설날, 秋夕, 寒食節에 행하는 차례와 성묘를 허례와 낭비로 간주하고 전통적 민족고유의 명절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면서 共產主義思想 鼓吹와 金日成 偶像化를 위해 새로이 명절로 指定한 소위 「社會主義的 名節」은 상대적으로 축하 하고 있다.

金日成生日 (4월 15日)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하여 各種

祝賀行事와 선물보내기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國際勞動節(5월 1일), 北傀政權創建日(9월 9일), 勞動節(10
월 10일) 등은 요란한 記念行事와 경축놀음을 벌이고 있다.

5. 南北韓 生活環境의 比較

가. 社會政策의 基調

사회정책면에 있어서 한국은 自由福祉社會의 실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즉 憲法 第30條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국가는 社會保障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生活能力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바로 국민의 기본적인 人權이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공산정권의 사회정책은 그 體制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全體를 위하여 ;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 (헌법 제49조)라는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집단주의적 생활화, 북한의 革命基地化, 그리고 金日成 唯一體制의 공고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정책의 중점방향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있다. (1970년 5차 勞動黨大會에서 金日成 報告)

① 주민들의 사회생활을 조직화하고 私生活를 포함한 모든 生活領域에 대한 黨的 통제를 강화하며,

② 가치박탈에의 공포와 만성적인 強迫觀念을 操作하여 북한 勞

動黨에 맹종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한 心理狀態에 놓이게 함으로써 이로 부터의 해방을 과잉충성에서 찾도록 하고,

③서로가 서로를 監視하도록 하며 「肯定的 規範의 一般化」原則에 따라 否定을 은폐하고 肯定的인 것만을 보고 따르도록 教養한다.

이렇듯 남북한의 사회정책은 국민의 복지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과 「黨과 首領」에의 무한한 충성을 강요하여 住民隸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과는 근본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정책의 기초에 準拠해서 주민들의 사회생활의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즉 한국은 인간위 존엄성이 보장된 사회이며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스스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제반 여건과 균등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 開放社會이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理想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그와같은 노력을 통하여 사회의 成員으로서, 또한 한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올바른 道德, 倫理觀과 遵法精神에 의하여 사회질서가 굳건히 다져 지며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對人關係를 통하여 和睦과 協同의 기풍이 振作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인의 생활을 희생시키는 바탕 위에서만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 나갈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북한공산집단의 操縱下에 움직이고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타율적 사회생활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같은 집단주의체제하의 組織社會에서는 개인의 慾求 充足이 소속된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질과 창의성이 충분히 개발될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직업선택, 住居地 移動, 여행등의 자유가 철저하게 제한된 폐쇄사회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사회생활의 領域은 硬 直化되어 있고 고정적인 사회생활 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나. 勞動生活

노동은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또는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생활의 必須要件의 하나 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문제에 관한 남북한의 기본적 차이점은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된다.

노동을 새로운 價值創造의 수단으로 보는 한국과 그것을 인생의 목적처럼 간주하도록 강요 당하고 있는 북한은 노동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對照的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동에 임하는 태도가 한국은 自願的인데 비하여 북한은 의무적, 강제적인 것이다.

따라서 勞動過程의 창의성에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며 노동자원

活用度에 있어서 역시 차이가 나는 것이다.

自願勞動原則에 의거하고 있는 한국은 勞動資源에 여유가 있어도 活用率이 낮은 편이나, 북한은 노동자원이 부족하면서도 勞動強度를 높이고 対象外의 노력동원(예: 학생, 가정주부등)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 그 한가지 예로서 內閣決定으로 발표된 「義務勞力動員에 관한 規定」(1950.3.25)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연간 최소 20일 이상 의무노동자로 動員되어야 하며 자동차 및 牛馬車는 연간 10~15일 이상 동원되도록 되어 있어 代價를 받을 수 없는 강제노동에 酷使당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직의 自律性和 統一性에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노조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個個의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은 자발적이며 노조는 근로자들의 권익옹호에 중점을 두고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이에 반하여 북한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聯盟」 또는 「職勤盟」에 가입하도록 강압당하고, 이러한 사회단체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에 대한 党的 통제와 강화되고 노력동원의 극대화가 이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단체들의 활동목표는 근로자들의 권익옹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을 黨周圍에 結束시키는 소위 「引込帶」 역할을 하며 근로자들의 「思想革命」을 위한 「先鋒隊」로서 「사회주의 경쟁의 조직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있다 (職勤盟規約)고 하겠다.

셋째, 勞動力管理와 勞動強制의 面에서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대의 노동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기업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생산시설의 개선,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福祉向上 과 근로자들의 技術研修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노동력의 「党的管理」에 중점을 두고 소위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명목 밑에 집단적 감시에 의한 강제노동을 실시하고 있다.

즉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 및 作業班, 工場, 企業所를 단위로 하여 大衆的 勞力競争運動을 전개하여 왔다.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경쟁」의 구체적인 형태는 소위 「千里馬運動」(1957년부터 시작)을 위시하여 「6個高地 占領運動」 「10大課業 完遂運動」등을 감행하였고, 1974년 「速度戰」 1975년말부터 「3大革命 불은기 쟁취운동」, 1976년 「3大革命 불은기 쟁취운동 충성의 등록장제」 등의 형태로써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왔으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즉, 노동보수를 따지지 않고 「사회주의 건설자」라는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千里馬」처럼 빠른 속도로 일하며, 個人別, 作業班別, 직장별, 工場 및 企業所別의 多元的인 경쟁조직으로 집단적 생산성의 提高를 독촉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산부분뿐 아니라 교육, 문화기관 등 非生産部門에서도 이와 같은 운동을 확대하여 소위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党的 總路線」이라고 그 意義를 조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쟁복구시기 이후 계속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勞力競争運動은 급기야 노동을 북한주민들을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노동성파를 각 개인, 각 작업반원들의 政治思想의 교양수준 내지 金日成에 대한 충성의 척도로 삼게 된 것이다.

다. 財産所有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의 收用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明示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生産財, 消費財를 막론하고 개인의 私的 所有가 인정되며 국가이익에 反하지 않는 한 그 재산권과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북한에서는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1958年말을 기하여 國체의 사유재산이 무상으로 몰수되었고 개인에 의한 상공업과 영농을 금지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私有財産을 축적할 수 있는 機會를 완전히 排除하고 말았다.

북한은 그들의 헌법 18조와 19조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임을 규정지우고 자연자원, 重要공장, 기업소, 항만시설, 교통운수 및 통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 22조에서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所有라고

明示하였다.

최근 東歐 共産諸國에서는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서 사유재산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個人商工業과 營農을 부활시켜

<表 71> 북한의 國·公·私有 變動표

부 분 연 도		49	53	56	57	58(6月)	58(10月)
공 업	國·公有	90.7	96.1	98.3	98.7	100	
	私 有	9.3	3.9	1.7	1.3	-	
농 업	國·公有	3.2	32.0	80.9	95.6	98.6	里單位
	私 有	96.8	68.0	19.1	4.4	1.4	로統合
상 업	國·公有	56.5	67.5	84.6	87.9	100	
	私 有	43.5	32.5	15.4	12.1	-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편람(1974)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 북한은 1977년 4월 새로운 「土地法」을 제정하고 오히려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사회주의적 관리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 所得 및 生活水準

소득수준 또는 賃金은 社會生産物의 원가를 구성하는 가장 주

요 요소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生計維持의 원천이기 때문에 社會 生活方法의 觀點에서는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 즉 賃金水準의 변동은 일반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규정짓는 決定要因이라 하겠다.

물론 남북한은 그 경제체제를 달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생활에 관련된 數量的 比較 自體로서는 그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 이지만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그 수준을 비교하는 한 尺度로서는 충분하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제체제 여하를 막론하고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國民厚生の 증대와 福祉向上에 있다고 하겠으나 현실적 問題로서 국민생활의 向上은 사실상 체제의 特殊性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민의 복지향상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주민의 복지향상은 副次的으로 하고 戰力增強을 통한 한반도 赤化統一에 정책목표를 두어 왔다. 따라서 이것은 산업구조면이나 社會施策面에서도 그대로 反映되어 북한은 아직도 重工業分野에서 輕工業分野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생활조건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생활향상 전망을 평가해 보면, 한국은 重化學工業의 집중적 육성으로 기계, 금속, 화학, 造船工業部門의 급속

한 발전이 예상되며 제 4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에는 현재의 GNP 성장추세로 보아 그 규모가 586.6 억「달러」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 1,512 「달러」, 수출 141.6 억 「달러」의 중간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은 過重한 군사비 부담과 外資導入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가일층 악화, 그리고 産業間의 不均衡深化 등 主要인으로 인하여 그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경제의 名目成長率이 7~8%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구증가 및 화폐가치 변동 등 主要소에 의해 實質成長率은 4~5%가 될 것이기 때문에 80년대 초에 가게 되면 남북한의 GNP 규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의 所得水準(賃金)을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977年 現在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의 결과 GNP 315 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864 「달러」(제 4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대한민국, 1976.12)에 이르고 있는 반면, 북한은 GNP 98 억 「달러」(추정), 1인당 소득 591 「달러」(Military Balance, 1978~79, 국제전략 문제연구소)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千里馬」처럼 흑사당하면서도 가장 低廉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物價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수준마저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더우기 文化生活이란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表8> 북한의 직업별·직위별 임금 (1974.6 현재)

(북괴「원」 2원 35전 처 1\$)

구분	직업	임금액 (원)
중앙당 및 정무원	부장 (장관급)	300 ~ 350
	副部长 (차관급)	250 ~ 300
	국장급	160 ~ 190
지방당 및 인민위원회	도 (특별시) 위원장급	200 ~ 240
	시·군 위원장급	110 ~ 150
경제기관	특급기업소 지배인	260 ~ 310
	1급기업소 지배인	200 ~ 230
	2급기업소 지배인	155 ~ 180
교직원	대학교원	90 ~ 190
	고등학교교원	60 ~ 80
노동자	3급	59
	8급 (기사급)	92

자료: 평화통일연구소, 남북한생활실태 비교 (1975)

<表 9 > 북한의 주요 물가시세

(1973년 말 현재)

類別	品名	단위	가격	類別	品名	단위	가격
육류및	牛 肉	Kg	7원50전	섬유류	빅타이	개	5 - 8 원
어 류	豚 肉	Kg	7원 50 전		노동복	着	25 원
	동 태	Kg	30~60 원		모직양복	着	200~250 원
과자및	비스켓	Kg	4 원	주류및	소 주	병	2원50 전
과실류	사 과	Kg	1 원	연 초	인삼주	병	5 - 6 원
					인삼담배	20 본1갑	1원 60전
조미료	간 장	병	18 전	생활필	우산	개	16 원
	설탕	Kg	2 원	수품및	전기다리미	개	20 - 25 원
	참기름	ℓ	9 원	학용품	라디오	대	100 - 250 원
					T V	대	350 원
					손목시계	개	120 원
					만년필	개	14 원

자 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경제통계집 (1973) 및 평화통일
 연구소, 남북한생활실태 비교 (1975)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이른바 「勞動의 質과 量에 따른 分配」라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내세워 놓고 特權層의 高所得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表8>과 <表9>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高等中學校 敎員의 경우 그 賃金이 60원이므로 고급 「라디오」 250원짜리는 4個月分 賃金에 해당(한국의 경우는 1個月分으로 7~10대 구입)되며, 「텔레비전」은 6個月分의 임금에 해당(한국의 경우에는 1個月分으로 충분)된다. 손목시계의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에서는 2個月分의 임금에 해당되나 한국에서는 1個月 임금으로 10개 내지 13개(1個 15,000원)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임금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食糧配給價格, 住宅使用料, 光熱費 등이 비교적 저렴한 대신, 월급은 주로 副食費와 衣類代, 잡비 등에 충당되게 조정하며 계속 노동할 수 있는 최저생활조건만을 겨우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마. 趣味·娛樂

남북한 주민들의 노동시간과 「레저」, 취미와 오락의 實態는 서로 근본적인 차이를 안고 있다. 이는 물론 社會構成原理 내지 社會體制維持方法의 차이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그보다도 북한의 經濟發展段階로서는 아직도 「레저」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있는」 段階가 못된다고 하겠다.

韓國에서는 職業이라든가 所得水準, 教育水準 등에 따라 各己 選擇基準이 다르고 또 各자의 개성과 生活環境에 따라 日課와 취미 오락이 多様하게 分化된다. 이것은 自由社會의 多様性を 띤 伸縮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劃一社會인 北韓에서는 우선 職業選擇이 黨에 의하여 賦與될 뿐만 아니라 <表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職種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全體的으로 適用되는 基本的인 日課는 共通성을 띤다.

이와 같은 日課와 關聯해서 北韓에서의 生活를 살펴보면 우선 自己의 時間, 즉 개인적 私生活은 있을 수 없고 틀에 짜여진 軍隊式的 集團主義的 日程과 各種 社會團體의 集團的 活動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全住民이 組織化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個人的 時間은 雜念을 갖게하는 原因이 된다는 共產主義式 思考方式의 產物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에서는 肉體 및 精神勞動分野를 莫論하고 每日 完遂해야 할 作業책임량이 過多하게 策定되어 있고 日課를 착오 없이 進行시켜야만 批判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強迫觀念에 사로잡혀 마음의 여유가 없다.

個人的 自由時間을 가지고 生活를 즐긴다는 것은 애초부터 염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그리고 北韓 勞動黨은 「黨과 首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行動하라』고 北韓住民들에게 教養하고 있다.

이런 狀況下에서 취미나 오락은 論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취미나 오락에 대한 施設도 全無하기 때문에 가끔 公休日 같은 날 公園地帶를 찾는 것을 北韓住民들은 바로 유일한 休息이며 오락으로 생각하고 있다.

<表 10> 南北韓 住民의 基本日程表

구 분 일 과	북 한		한 국	
	남자(가장)	여자(주부)	직 장 인	직업여성
기 상	06:00	05:30	06:30	06:00
출 근	07:30~08:00	07:30~08:00	08:00~09:00	08:00~09:00
독 보 회	08:30~09:00	08:30~09:00	무	무
근무시간	09:00~20: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김일성학습	20:00~22:00		무	무
일일사업총화회의	22:00~22:30	18:00~19:30	무	무
퇴 근	22:30	19:30	18:00~19:00	18:00~19:00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사회문화 계량적 비교 (1975)

주 : 북한여자의 경우 직장을 가졌을 때 퇴근후 夕食까지 마치려면 취침시간은 23:00以後가 된다.

바. 宗 教

大韓民國 憲法 16 條에 의하면 「① 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 國教는 認定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17 條에서는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에서는 宗教의 自由가 憲法에서 保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實際 社會生活에서 宗教의 힘이 차지하는 影響力은 대단히 큰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주요 宗教는 基督教, 佛敎, 천주교, 천도교, 유교 등이 있으며 이슬람교도 最近에 와서 布敎되고 있다. <表 11 참조>

韓國의 宗教人口는 27,368 千名으로 全體人口의 77%를 차지함으로써 世界的인 宗教國家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로마 敎皇「바오로」6세는 75年 6月1日 天主教 서울大敎區長 金壽煥 樞機卿을 北韓의 平壤敎區管理長으로 任命한 바 있다.

韓國의 宗教別 分布를 보면 傳統的인 佛敎가 敎職者나 信徒敎에 있어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교, 基督教, 天主教의 순서이다. 즉 韓國 國民은 絶대 다수가 오랜 歷史를 통하여 宗教를 신봉하여 왔으며 宗教가 한국민의 生活感情의 深層部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北韓에서는 宗教의 말살을 合法化하고 있다. 오늘날 北韓에서 만약 宗教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金日成 信仰일 것

< 表 11 >

韓國의 宗教別 教勢

('77.10.31 現在)

宗 教	教 堂 數	教 職 者 數	信 徒 數
仏 教	7,416	23,015	12,906,851
天 主 教	2,308	4,130	1,093,829
基 主 教 (改 新 教)	19,457	23,526	5,001,491
儒 教	232	11,944	4,723,493
天 道 教	142	1,628	814,673
大 宗 教	52	46	170,631
円 仏 教	321	3,204	806,550
其他宗教	1,303	6,441	1,850,460
合 計	31,231	73,934	27,367,978

資料：文化公報部 宗教課

이고 그외에 아무것도 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共産主義에 依하면 「宗教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北韓에서도 宗教에 대하여 「共産主義를 全面거부하는 社會主義의 最大의 敵」으로 단정하고 이를 말살시켰다.

金日成은 1959年 「우리는 왜 宗教를 反對해야 하는가」라는 反宗教運動의 指針書에서 「악질 宗教인들이 宗教의 간판 밑에 革命的인 行爲를 조장하여 宗教의 사상을 우리들 속에 扶植시키려

고 企圖하므로 이것과 철저히 鬪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宗教抹殺政策을 감행하여 왔으며, 특히 6.25를 前後하여 北傀는 많은 宗教人을 학살하였다.

北韓 憲法 第54條에는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旧憲法 第14條에서 「公民은 信仰 및 宗教儀式舉行의 自由를 가진다」고 規定해 놓고는 실제로는 宗教抹殺政策을 썼던 바, 新憲法에서는 이러한 것을 法制化할 企圖을 分明히 한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 共產集團은 8.15 解放 以後 宗教에 대한 制限政策, 彈壓政策, 抹殺政策등 3 단계를 통하여 1955년까지 모든 宗教團體와 宗教儀式을 抹殺하였고 全 宗教人들을 「反動分子」라는 罪名으로 학살하거나 社會成分을 複雜한 군중으로 分類하여 社會進出을 가로 막고 要監視의 대상으로 迫害를 가하고 있다.

이와 同時에 宗教團體의 재산(토지, 건물)을 전부 몰수하여 이를 託兒所, 유치원,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찰은 休養所등으로 轉用하였다.

이러한 現實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北韓 共產集團은 경우에 따라 架空的인 宗教團體를 急造하여 이를 政治的 또는 外交的 目的에 이용하기도 하는 兩面的 기만술책을 쓰고 있다. 예컨대 「朝鮮基督教聯盟」이니 「朝鮮佛教徒聯盟」등의 위장단체를 만들어 그 이름으로 韓國의 一部 宗教人들과 統一戰線形成을 모색하고자 '74년부터 韓國의 宗教政策에 對하여 비난성명을 내는 등 本格的인 對

南宣傳에 活用하고 있는가 하면 對外的으로 국제여론을 誤導시키는데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6.25 이전에는 北韓의 宗教團體를 黨傘下團體로 御
用化시켜 南北協商 등을 내건 對南非難에 이용하였고 60年代 金
日成 1 人體制가 確立되고 南北間의 긴장이 고조된 狀態에 이르러
御用宗教團體의 活用價值가 없어지자 이것마저도 없애 버렸다.

그러다가 1972年 韓國의 10月維新 以後에 北傀는 유럽 宗教團體를
잡자기 만들어 내어 國際的인 宗教會議에 參加시키려는 動向을 보
이는 한편, 世界 各의 宗教人들과의 連帶性을 모색하여 이들과
연합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以上과 같은 現實的 諸 事實로 미루어, 北韓에는 앞으로도 宗
教가 共產主義 사상과 金日成 唯一思想에 害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宗教는 부활될 수가 없는 것이며 宗教活動에 必要한 外的
인 干與도 철저히 배제될 것이다.

6. 南北韓 文化生活的比較

가. 教育

(1) 教育目標 및 政策方向

韓國의 教育은 國民教育憲章精神을 基本理念으로 하고 이 理念을 生活化하며 國家發展과 民族中興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韓國人을 養成하는 것을 基本目標로 삼고, 개인의 能力과 창의성을 최고도로 伸張하는 全人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北韓은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鬪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新 人間으로 키운다」(北韓憲法 第39條)고 그 基本目標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判異한 基本目標에 따라 韓國의 教育機關은 人格陶冶의 수련장인데 비해, 北韓의 各級教育機關은 이른바 「思想革命遂行을 위한 基本수단의 하나」(金日成,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로서 「革命鬪士」 養成을 目的으로하기 때문에 兵營化되고 勞力場化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北韓의 教育은 진정한 의미의 人間開發이 아니라 청소년을 集團化하고, 集團勞動化하며, 集團的 軍事訓練單位化하기 위한 組織化過程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表13참조)

그다음 教育政策方向에 있어서 韓國은 國民教育憲章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함양하며, 「명랑하고 따뜻한 協同精神」을 배양하고, 「스스로 國家建設에 참여하고

奉仕하는 国民精神」을 드높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反해 北韓의 教育政策方向은 제 5 차 党大会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对南武力赤化統一路線에 積極 参与할 수 있는 소위 「全人民의 革命化와 프롤레타리아 1党独裁体制를 維持하고 「社会主義建設」에 意欲적으로 参与할 수 있는 이른바 「全人民의 勞動階級化」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方向은 1977年 9月 北傀 党 5期14次 全員會議에서 소위 「社会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를 採択함으로써 社会主義 高度의 段階指向에 부응한 長期教育 政策方向으로서 確定되고 있다.

이 「教育테제」는 社会主義教育事業을 원만히 進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教育에서 党性·勞動階級性을 구현해야 하며, 둘째, 教育에서 「主体」를 세워야 하며, 셋째, 教育과 革命實踐을 結合하여야 하며, 넷째로 社会主義國家는 教育事業을 責任지고 組織進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2) 教育内容

南北韓의 教育内容이 表面上, 知育, 德育, 体育으로 3大分되고 있는 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南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의 相異로 因하여 實際 教育課程에서 나타나는 分野別 教育内容은 全혀 判異하다.

즉 韓國에 있어서의 知育은 순수한 真理探究에 基本을 두고 自己活動에 必要한 지식이나 전문가로서의 基本素養을 기르게 하며

德育은 정서의 순화와 건전한 道德, 倫理觀, 國家觀의 確立에, 體育은 個人生活과 社會生活을 즐겁고 보람있게 영위할 수 있는 健康과 體力을 배양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의 知育은 共產主義의 原理原則을 습득케 하고 德育은 소위 「共產主義 道德品性」을 지닌 「革命鬪士」의 精神을 부식시키며 體育은 「國防體育」이란 表現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軍事力의 強化에 重點을 두는 등 歪曲된 政治的 目的에 따라 教育內容이 構成되어 있다.

1977年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提제」에서 제시된 「社會主義教育의 內容」을 보면, 政治思想敎養, 技術教育(勞動教育) 및 國防體育教育으로 区分해 놓고, 특히 政治思想敎養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思想教育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學生들을 主体思想으로 武裝시키기 위해서는 黨政策敎養과 革命傳統敎養을 強化해야 하며 이것은 무엇보다 黨에 대한 「充實性」과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데 基本을 두고 進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北韓의 軍事教育을 보면,

첫째, 教育時間面에서 大學은 年間 240時間, 高等中學(高等班)과 技術專門學校는 年間 120時間으로 다른科目에 비해 軍事教育에 많은 時間을 할당하고 있으며,

둘째, 組織面에서 보면 大學과 技術專門學校는 準正規軍의 性격을 지닌 勞農赤衛隊의 편제를 적용하여 梯隊單位로 軍事組織化되어 있고 學校黨委員會에서 그 指導와 運營을 장악하고 있으며, 勞農赤

衛隊의 연령에 미달되는 學生(17세 以下로 高等學校 3年~5年)도 붉은青年近衛隊를 組織하여 軍服과 軍帽를 착용하여 AK步銃으로 武装되어 있다.

세째, 高等中學校 中等班과 人民學校學生도 模擬AK步銃으로 武装하여 軍事訓練을 받고 있는 實情이며, 유치원 어린이의 각종 유희역시 戰爭놀이로 始終되어 있다.

그리고 學生들의 社會義務勞動 實態를 보면 北韓은 1959年 3月 2日 中學校 以上 全體學生에게 「義務勞動制를 實施할 데 대한 內閣決定 第18號」를 採択한 이후 人民學校는 年間 4주, 高等中學校 年間 8주, 大學이 12주의 義務勞動을 實施하고 있으며 必要에 따라서는 義務勞動時間에 關係없이 隨時로 動員되어 왔다.

예컨데 1973年 9月부터 新 6個年經濟計劃의 早期達成이란 名目下에 高等中學校 5學年 以上은 정상수업을 廢止하고 工場, 鉸山, 各種建設事業場 및 農漁村에서 「現場學習」이란 美名으로 강제노동에 動員되어 왔던 것이다.

(3) 學校現況 및 學生活動

<表 12>에서 南北韓 教育의 學校現況을 살펴 보면, 學校數에 있어서는 76年基準 韓國이 9,674個校로 北韓의 9,561個校보다 100餘校가 더 많으나 유치원까지 包含되면 北韓이 더 많은 數가 된다.

學生數는 韓國이 9,183千名인데 北韓은 그 절반도 못되는 4,401千名으로 전체적으로 人口比就學率이 낮은 편이다.

그런데 北韓이 學生數에 있어서는 한국의 절반에도 미달되면서 學校數에 있어서 韓國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北韓이 發表한 學校統計 속에는 各道別로 設置되어 있는 「黨學校와 郡黨學校」, 그리고 主要工場別로 設置되어 있는 勞動者들의 補修教育機關인 「工場大學」등 非正規 教育機關까지 包含되어 있는 反面, 韓國에서는 技術學院이나 專修學院 및 職業養成所 등은 統計에서 除外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7年 現在 敎員數는 韓國이 228千名으로 北韓의 107千名에 비하여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으나 學生數와 比較할때

<表 12> 南北韓 學校 및 學生現況 (76年末 現在)

구별 학교별 구분 (부과명칭)	한 국		북 한		비 고
	학교수 (個)	학생수 (千名)	학교수 (個)	학생수 (千名)	
유치원	635	37	約6万	約2,500	북한은유치원 탁아소포함
국민학교 (인민학교)	6,405	5,504	4,700	1,748	
중학교	1,977	2,117	4,100	2,398	
고등학교 (고등중학교)	1,198 } 3,175	1,254 } 3,371			
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96	68	600	158	북괴 (75.4)
대학교 (교육초대포함)	98	240	161	97	북괴는 공장대 학포함
계	9,674	9,183	9,561	4,401	유치원제외

※ 북한요람 (1977), p. 118

<表 13> 南北韓의 主要 學生組織 및 活動

구분	단체명	대상·구성	지 도	활 동
한	어린이회	국민학교 전체 어린이		자치활동: 어린이 학습자율 교의활동, 문화활동, 학교규율
	대한소년단 대한소녀단	○유년대 -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희망자 ○소년대 - 중학생중 희망자 ○연장대 - 고등학생 중 희망자	各 學校에 1 名의 指導 教師	품성의 향상, 신체발달과 체력 증진, 유용한 기능 체득, 사회에 대한 봉사
	학생회	중학교 전교생		자치활동: 각종문화, 체육, 교양
국	학도호국단	고등학교, 대학교의 전교생		학생의 군사교육, 각종 봉사활동 및 새마을사업 참여, 국가 비상사태시 사회질서유지, 救護 복구 또는 지역방위를 위한 각종지원 또는 협조
북	소년단	인민학교~고등중 학교 2년	당원교원가운데서 열성자를 선출. 郡 (市) 社 勞靑에서 發令	조직적활동: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각종 학습과 과외활동

한	붉은청년 근위대	고등중학교 고등반(14~15세) 「교원대학생」전 원(16~17세)		반혁명요소적발, 학생군사훈련 노 동적위대 및 전체 사회단체들의 사상적 질적·향상의 선도적 역할수행
	사로청	만14세(고2년 下半期)~만30세 이하	각학교사로청 위원장	당의 후비대로서 훈련을 받는 동시에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전위대>역할수행, 학생의 학습 및 과외활동을 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도통제

※ 북한요람(1977), pp.119-120 참조

學生 1人當 敎員配置率은 北韓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北韓은 成人敎育機關에 從事하는 黨員이나 技術者 및 軍事訓練要員까지 敎員속에 포함하고 있는데서 나타난 結果이기도 하다.

그리고 學生들의 校內活動과 學生組織狀況을 보면 <表 13>과 같다. 韓國學生活動은 주로 自發的이고 自願的 組織에 의한 自治活動으로 文化活動, 社會奉仕活動에 參加하고 있는 反面에 北韓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下向的인 系統組織에 의한 政治社會를 통하여 軍事訓練, 思想敎養은 勿論 反革命要素를 적발하고 學生動態를 감시·통제하는 대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4) 教育体系

<表14-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南北韓의 形式的인 教育制度面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内容面에서는 차이가 많다. 그 몇가지 特徴的인 것을 살펴 보면, 첫째 北韓은 유치원 教育和 学校前義務教育을 강조하고 있는 反面에 韓國은 国民学校期間을 6年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義務教育年限에서 큰차이가 있으나 이는 社会体制의 基本적 차이에서 연유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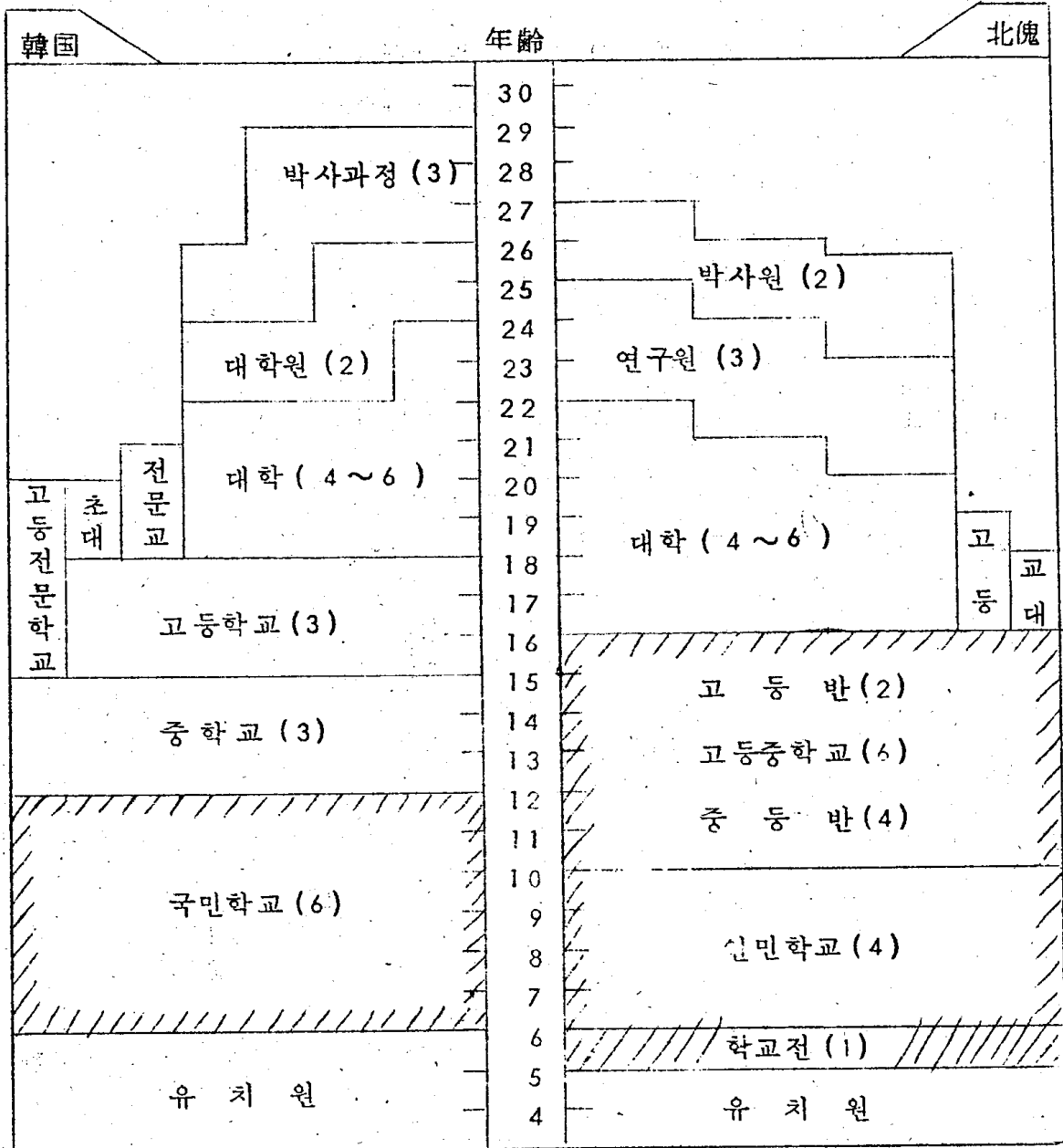
둘째, 北韓은 初等教育에서부터 党幹部層과 特殊兒童을 대상으로 하는 革命유자녀 학원등 특권적인 貴族教育機關을 별도로 運營하여 一般大衆은 入学하지 못하는 差等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셋째, 学校的 設立面에 있어서 北韓은 모든 教育機關이 国营으로 되어 있어 学校設立의 趣旨나 目的이 党이나 政府機關의 의도에 따라 劃一化되어 있으나, 韓國은 国·公立外에도 私說財團에 의한 私立学校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設立者의 趣旨와 目標에 따라 각기 개성있는 教育和 理念이 具現될 수 있으므로, 融通性있고 多樣한 人材의 養成이 可能한 것이다.

넷째, 大学에 있어서 韓國은 綜合大学和 单科大学이 고루 地域別로 산재되어 있으나 北韓은 金日成綜合大学을 제외하고는 特殊科別 单科大学이며 마치 工場, 産業基地의 附屬 技術養成機關처럼 되어 있어 当該分野를 떠나서는 他分野에 適應하기 어려운 一面的 人材의 量産을 의도하고 있다.

< 表 14 >

학 제 비 교



韩国

- 49.12.1: 의무교육 (6年)
- 63. 3.1: 중학교무시험진학제
- 범례: 의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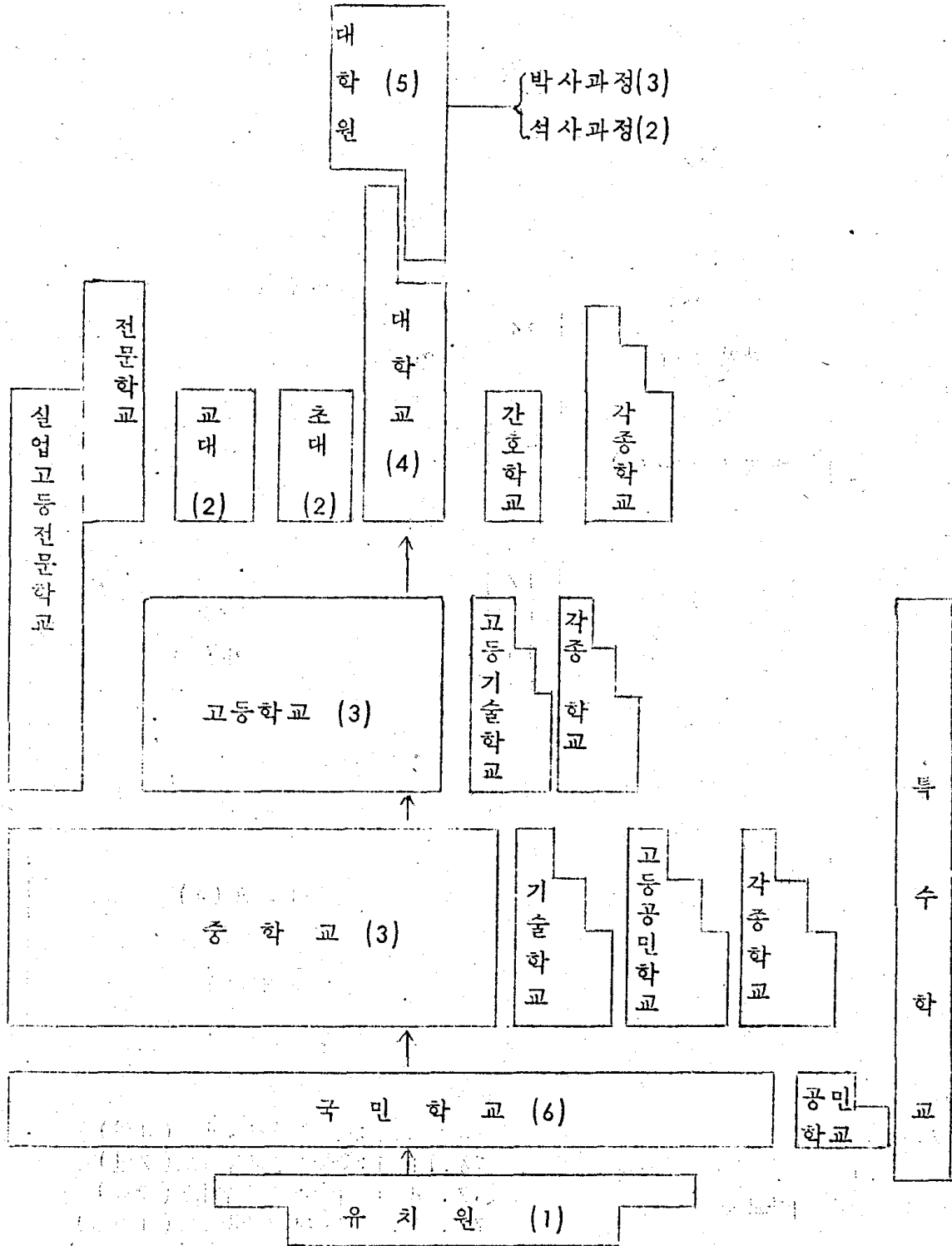
北傀

- 56. 8.1: 초등의무교육제도 (4년)
- 56.11.1: 중등의무교육제도 (7년)
- 67. 4.1: 기술의무교육제도 (9년)
- 72. 9.1: 고종의무교육제도 (10년)
- 75. 9.1: 11년제 고종의무교육제도

<表 15 >

韓國의 教育体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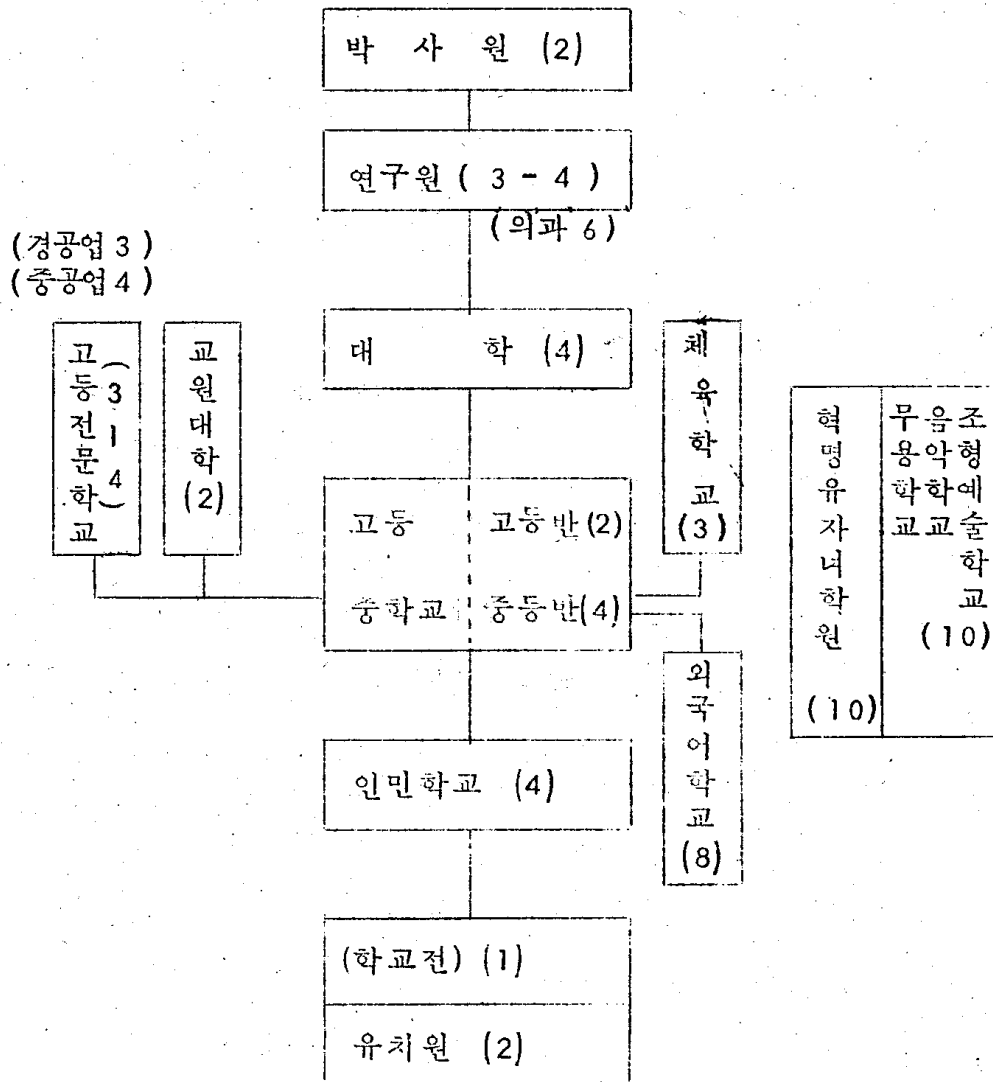
(1976년 현재)



< 表 16 >

北韓의 教育体系

(1975 年施行)



예를들면 北韓에는 「水利大学」, 「動力大学」, 「鎭山機械大学」등과 같은 것이 있어 (韓國에서는 1個学科에서 다루고 있는 分野임) 大学이라는 이름을 当該地域産業施設의 技士養成所 및 職業訓練所와 같은 機能을 担当케 하는 것이다.

나. 言論 · 出版

言論·出版·報道 등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表現의 自由는 人間의 基本權으로서 韓國에서는 憲法 18條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自由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制限 條件, 즉 通信社, 新聞社, 放送局, 出版社, 印刷所등을 個人 또는 民間法人이 設立할 수 있고 經營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도 自由民主主義를 保存하고 보다 廣範한 基本權을 保障하는 措置로서 内部分裂과 國民總和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던가 共產主義者들의 戰略戰術에 이용될 素地가 많은 과격하고 지나친 表現은 自律적으로 一部 規制되고 있는바, 이것이 結局 基本權自体를 侵害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近代社會에 있어서 어떤 나라를 莫論하고 基本權의 概念은 古典的 意味를 벗어나 自國의 現實에 알맞게 調整 適用되고 있는가 하면 國民들도 이를 受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北韓에서는 原初적으로 表現의 自由가 存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매스·미디어」를 國家가 独占하고 党性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매스콤」行為도 이를 完全히 封鎖하고 있다.

北韓憲法 53條에는 「公民은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規定하여 마치 住民의 基本權利인 表現의 自由가 保障된 것처럼 内外에 宣傳하고 있으나, 같은 憲法條項中에도 이러한 基本權을 否定하고 있는 事實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① 表現의 自由의 궁극목표가 되는 憲法 2條 「……全體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에 관한 規定

② 表現의 自由의 指導指針이라 할 수 있는 同 4條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적용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라는 規定

③ 表現의 自由와 關聯되는 施設, 媒體의 個人所有를 不許(國有化)하는 18條의 「生産手段의 國有化」 및 同 19條 「…通信機關은 國家만이 所有한다」는 規定

④ 表現의 限界로서 同 45條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主体的이며 革命的인 文化, 藝術을 發展시킨다」는 規定 등만 보아도 表現의 自由는 黨이 指導理念에 따라 그 範圍內에서 政權이 主導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金日成은 「新聞, 雜誌, 書籍같은 出版物이야 말로 黨과 大衆을 連結 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黨이 제시하는 革命課業, 實踐을 위해 勞動大衆을 組織動員하는 宣傳·煽動의 道具」라고 규정함으로써, 黨性에서 離脫한 「매스콤」이란 存在할 수 없음을 明白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北韓에서는 共產主義를 찬양하고 合理化하는 表現은 무제한하게 強要되면서 이를 批判하는 것은 바로 「反動的 行動」으로 嚴格하게 統制되고 다스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北韓은 「매스콤」을 独占하여 体制維持에 해로운 情報源을 차단함으로써 바람척하지 않은 反對的 態度發生을 事前에 封鎖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機能도 集團的 宣傳者, 集團的 煽動者, 集團的 組織者로 一貫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매스·미디어」는 뉴스의 傳達이나 오락·교양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黨과 政權에 의한 住民의 指導 統制手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新聞은 黨機關紙 「勞動新聞」을 비롯하여 「민주조선」, 「평양新聞」, 「人民軍新聞」, 「勞動青年」등 中央과 地方에 모두 30餘種이 있으며, 雜誌는 「근로자」 「천리마」, 「勞動者」, 「朝鮮文學」등을 發刊하고 있다.

放送局은 對內用的 中央放送과 對南用的 평양放送, 그리고 偽裝黑色放送인 「統革黨목소리」가 있으며 各道所在地에 地方放送局이 設置되어 있다. (表17 參照)

그러나 「텔레비죤」의 普及은 極히 低調한 實情이며, 라디오의 경우에도 郡里單位에서는 無線보다 有線放送網이 펼쳐져 있고, 全家口數의 65%에 해당되는 세대가 有線放送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住民統制가 보다 容易하다는 點에 착안한 것이다.

<表 17>

南北韓 放送局 現況

	種 類	韓 国	北 韓
라 디 오	중앙방송국	7 個 ※ (MBC, TBC, FM 包含)	2 個 { 중앙 (对内) 평양 (对外)
	지방방송국	47 個	10 個
	특수방송국	극 동 방 송 아 시 아 방 송	統革党목소리放送局
T V	중앙국	KBS (10~50kw) (公營U式) TBC (10~50kw) (民營U式) MBC (10~50kw) (民營U式)	中央 TV: (25kw) (國營O式) ※칼라, 黑白 병행방송
	지방국	9 個	개성 TV: (20kw) (國營U式)

다. 文學·藝術

(1) 文藝政策의 基本方向

自由民主主義의 國家에 있어서 文化·藝術의 一般의 目的은 自由롭고도 순수한 內心的 欲求에 의하여 「美」를 창조하고 價値를 追求하기 위한 것이다. 韓國의 文藝活動은 이와같은 一般의 目的을 追求하면서 同時에 우리民族의 傳統的인 文化·藝術을 계승, 發展시

켜 文芸중흥을 이룩하고 國民들의 生活을 보다 정서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文芸政策 역시 民族文化의 繼承, 發展과 外國文化의 肯定的인 面을 우리 實情에 맞게 받아들여 우리 文化를 주체적으로 發展시키는 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의 文芸活動의 目的은 黨政策具現, 共產主義 宣傳과 찬양, 共產主義的 人間改造, 그리고 勞動意慾 提高와 金日成家系 偶像化 등으로 되어있으며 文芸政策 역시 선전과 선동의 手段으로 文化와 藝術을 活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基本內容 및 方向은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창작방법을 具現하고 「黨性, 階級性, 人民性」의 原則을 고수하며 「思想革命과 文化革命」遂行의 強力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提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金日成은 第5次 黨大會 報告에서 「文化藝術은 근로자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育하며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데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共產主義 世界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革命的인 作品을 더 많이 창작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고 力說한 바 있다.

이에 따라 北韓 文芸人들은 共產政權의 侍女가 되어야 하며 「革命的 作品을 통해서 낡은 사상과 복고주의적 生活양식이 발붙일 수 있는 사소한 틈」마저도 없애는 데 전념해야 한다.

(2) 創作活動

韓國에서 作家·藝術人들은 創作活動에 있어서 原則적으로 如何한 形態의 干涉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政府의 文芸중흥政策에 따라 創作活動에 必要的인 資金과 資料의 支援을 받게 된다. 韓國에서는 創作意慾을 높이고, 新人발굴을 위해 「藝術人賞」을 비롯한 각종 文化賞이 마련되어 창작활동에 더욱 精進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에 反하여 北韓에서는 作家·藝術인들이 自由職業인들이 아니라 共產政權에 고용된 선전요원으로서 存在하며 이 때문에 그들은 철저한 「党的統制」下에 作品活動에 從事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作家·藝術인들의 創作活動은 다음과 같은 特異點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北韓의 文芸活動은 첫째, 이른바 「民族的 形式의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革命的인 것」이어야 한다 (北韓憲法 第45條)는 「슬로우전」 밑에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立脚한 描写方法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 內容은 金日成의 「業績」과 「덕성」, 「革命傳統」, 「革命的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鬪爭」, 「祖國解放戰爭·社會主義 建設·祖國統一·國際革命力量과의 連帶性」 (北韓政權樹立 30週紀念 文芸作品모집 기준), 그리고 階級鬪爭을 위한 교양, 黨政策宣傳을 위한 思想性的 具現 등 순수藝術性的 追求보다는 目的 意識的 사상교양의 表現으로 일관되어 있다. 즉 美의 創造보다는 黨政策의 선전선동에, 創作보다는 模造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다. 「社会主義的 写実主義」 創作方法이란 1932年1月 소련 共産黨 17次大会에서 採択된 것으로 共産圈 文学芸術의 創作의 基本原則이며 方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方法에 의하면 作品속에 나타나는 事件의 過去나 現在를 描写하되, 事件自體의 眞實이 아니라 創作方法의 하나인 허구성을 利用하여, 반드시 階級的이며 革命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文芸人들은 「作品製作을 現地에서 한다」는 原則에 따라 工場, 鉦山, 建設場, 農漁村등에서 直接 일하면서 군중을 당주위에 집결시키는 선동요원의 역할도 兼하게 된다.

셋째, 모든 作家·文芸人들을 「朝鮮文学芸術總同盟」에 망라시켜 團體的 壓力을 가함으로써 창작생활을 統制한다.

그들은 「集團的創作」을 義務化하고 複數의 人員에 의한 共同製作을 위주로 하며,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집단, 즉 黨의 의도가 反映되도록 努力하는 同時에 모든 正盟員들에게 주제별 作品製作 責任量이 定해져 있어 주제선택권마저 없는 것이다.

넷째, 北韓의 文芸活動에서 보다 重要한 것은 소위 「芸術小組」의 運營이다.

「芸術小組」는 地域別, 各工場, 企業所, 協同農場 등 生産職場別이나 部隊別, 學校別, 機關別로 広範圍하게 組織되어 1977年 現在 北韓 全地域에 무려 11만 2천개에 달한다.

이들 小組는 作業中 休息時間을 利用하여 음악 무용등 공연활동을 벌이며, 이들 공연을 통해 金日成 偶像화 및 黨政策을 선전하

고 勞動意慾을 고취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3) 民族文化의 傳承開發

韓國은 民族的 正統성을 繼承, 發展시키기 위하여 民族文化의 保存과 開發을 通한 民族文化史의 定立, 새로운 民族文化 유산의 開發, 文化財 보호 및 관리의 철저화 등 諸對策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民族文化유산을 根本적으로 破壞하고 있다. 表面上 北韓에서도 民族文化를 云謂하고 繼承, 發展시키고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實際로는 그들이 말하는 民族文化의 概念은 다르다. 즉 그들은 歷史主義에 依기하는 것이 아니라 階級鬪爭의 原則에 依거하여 民族文化를 合理化하고, 現体制와 特定人의 存在를 文化史의 側面에서 정당화하며, 「唯一思想」注入을 目的으로 하는 소위 「社會主義的 民族文化」만을 그 범주속에 넣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民族文化遺産의 傳承·開發에 있어서마저도 이를 北韓의 現實에 맞게 批判적으로 改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民族文化 歪曲의 事例를 몇 가지 例示하면 :

① 古典評價에 있어서 그들은 階級鬪爭의 側面만을 一方的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부전」을 착취계급과 人民間의 對立鬪爭이라고 해석하여 大體的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洪吉童傳」을 봉건적 신분제도에 反對하는 農民의 봉가를 描写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春香傳의 경우에도 이도령의 存在를 無視하고 방자와 春香母, 春香의 順으로 重要性을 강조하여 이 소설이 마치 계급鬪爭

을 描写하는 것처럼 脚色하고 있다.

(2) 가야금 줄을 従来の 13줄에서 18~19줄로 만들어 「千里馬的인 朝鮮人民」에 부합되게 音量을 늘리게 하고 있고

(3) 国樂의 탁음은 「搾取階級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구실을 붙여 탁음을 없애고 淸音만을 使用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基本的 文芸活動은 共產社会 建設을 위해서는 民族文化藝術의 正統성을 말살하여야만 된다는 反民族的 歷史意識이 그 밑바닥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文芸政策으로 인하여 北韓住民 특히 戰後 세대들은 社会主义體制下的 문물과 人間만이 革命的, 肯定的存在라고 認識하고 기타 민족고유의 傳統的인 모든 제도와 문물은 퇴폐적, 부정적인 것으로만 認識하는 편파적인 의식구조를 형성시켜 놓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文芸作品 創作이 藝術性 보다는 思想的 表現에 치중하고 있어 住民들의 性格은 정서성과 人間美를 상실한 비타협적이며, 鬪爭的인 性格으로 잘못 誤導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라. 学 術

(1) 言語의 異質化

言語學에 있어서 言語의 概念을 어떻게 定立할 것인가 하는 것은 言語의 性質과 本質을 어떻게 이해하고 規定하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韓國은 言語를 音聲 또는 文字로써 人間의 思想이나 感情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고, 서울에서 現在 中流階層이 使用하고 있는 말을 標準語로 定하고 있다.

元來 共產主義者들은 言語의 本質을 社會의 切實한 必要에 따라 創造된 社會的인 現象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思想交換의 必要에서 生成되었고 社會밖에서의 言語는 存在하지 않으며, 「言語는 社會存在의 全時期를 통하여 作用하는 社會的 現象중의 하나」(스탈린)라고 한다.

이에 따라 北韓에서는 言語의 定義와 社會的 性格에 대해서, ①思想交換 手段, ②思想改造의 무기로 規定하고 있으며, 특히, 北韓 勞動黨 5次大會에서 決定된 言語政策 중에는 住民들의 思想改造의 수단 및 階級鬭爭과 革命의식을 높이기 위한 手段으로서 효과를 거양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같이 北韓에서는 人間의 순수한 감정과 사상을 전달하는 言語마저 「革命과 建設의 強力한 무기」로 規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말의 표준성을 부인하고 「文化語」라고 쓰고 있다.

즉 金日成은 「우리 革命의 全般的인 戰略과 戰術이 세워지는 革命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을 기준으로 하여 言語의 民族的 特性을 保存하고 發展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標準語라는 말은 마치도 서울말을 뜻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文化語로 고쳐 쓰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평양말의 標準化를 시도하였다. ('66.5.14, 「韓鮮

語의 民族的 特性을 옳게 살려나갈 데 대하여」, 金日成 演說)。

이리하여 南北韓에서는 같은 말을 사용하여도 뜻을 전혀 달리하거나 서로 이해할 수 없는 言語, 또는 같은 뜻을 지녀도 表現方法이 다른 言語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北韓에서는 「主体性」이란 用語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正確한 적용」이란 뜻으로 해석되고 「帝國主義」라는 말은 「独占資本主義」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形態는 다르면서 뜻이 같은 단어로서, 「無秩序하다」는 말을 北韓에서는 「무연하다」라고 하고, 展示物을 「직관물」, [술선수범]을 「以身作則」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또한 形態는 같으면서 뜻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아버지라고 할 때, 韓國에서는 親父母를 말하나 北韓에서는 金日成을 가리키고 있으며, 「아가씨」라는 말을 北韓에서는 봉건사회의 잔재 用語로 取扱하는가 하면, 韓國에서는 「빨치산」이라는 말이 共產계렬라를 뜻하나 北韓에서는 革命的 英雄을 뜻한다.

이렇듯 民族的 同質性 維持를 위한 強力한 手段인 우리의 言語가 北韓共產集團의 그릇된 言語政策으로 점차 다르게 變質되어 使用됨으로써 單一民族의 成立要件이 되는 言語마저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言語의 階級性을 부인하면서도 그 사용에 있어서 階級鬪爭의 效果를 높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言語는 사상전달의 수단이라는 하나 인정과 정서의 表現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南北關係에 있어서마저 이제 言語障壁에 봉착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國史解釋

南北韓에서는 歷史, 특히 우리 民族史에 관한 解釋을 서로 달리 말함으로써 民族的 同質性 回復에 또 다른 난관을 造成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歷史主義 原則에 立脚하여 過去와 現在에 이르는 우리 先祖들의 生活記錄에 立脚, 우리 民族史를 解釋하고 이해하는데 反하여, 北韓에서는 우리 民族史를 소위 「黨性的 原則」위에서, 階級鬭爭史의 見地, 즉 勞動階級의 立場에서 解釋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韓國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빛나는 業績과 傳統을 繼承,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면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를 歷史的인 教訓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唯物史觀과 階級鬭爭史를 合理化하는 部分은 史實로서 인정하되 그렇지 못한 것은 여기에 맞게 수정. 왜곡하기 때문에, 民族史는 歷史主義의 原則에 의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黨性的 原則」을 강조하는 나머지 現在의 偏見으로 과거를 해석, 결국 非歷史主義 立場에 빠지고 있다.

北韓에서 우리의 民族史를 왜곡·수정하고 있는 주요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우리 民族史의 全體의 흐름을 民族史的 正統性이 定立되고 계승, 발전되어 온 過程으로 파악한다면, 北韓에서는 現在의 共產獨裁體制와 金日成이라는 한 個人의 出現을 合理化하는데 중점을 두고 民族史를 해석하고 있다.

둘째, 韓國에서는 民族史 學習과 研究를 통하여 民族精神을 이어 받아 올바른 民族史觀을 定立함으로써 民族中興의 精神的 座標를 設定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면, 北韓의 경우는 金日成偶像化와 1人獨裁의 永続化에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 民族史의 時代区分에 있어서 韓國은 古代, 中世, 近世, 最近世등 보편화된 原則에 의거하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唯物史觀의 소위 「經濟發展 5段階說」에 기초하여 原始共同社會(原始史), 노예社會(古代史), 封建社會(中世史), 資本主義社會(近代史), 共產主義社會(最近世史)에 따라 歷史를 人爲적으로 조작, 이에 適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機械的인 適用에 따라 北韓에서는 原始史를 先史에서 부터 紀元前 5世紀까지, 古代史는 紀元前 5世紀부터 紀元 前後 즉 古朝鮮, 扶餘, 辰國(三韓) 등의 存立時期를 이에 해당시키며, 中世史는 紀元前後의 時期로부터 19世紀 前半期 즉 三國의 成立으로부터 朝鮮朝 末期의 開港前까지, 近世史는 開港後부터 8.15解放까지, 最近世史는 8.15解放後의 時期를 該당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古朝鮮, 扶餘, 三韓 등의 社會를 노예사회로 단정함으로써 이를 民族史의 古代에 해당시키고, 三國時代로부터 19世紀 前半까지를 封建社會로 단정하여 中世로, 그後를 資本主義社會로 단

정하여 近世史로 하는 등 제멋대로 韓民族史를 造作, 날조시키고 있다.

네째, 우리 民族의 形成時期를 唯物史觀의 民族概念에 따라 날조된 소위 金日成 抗日빨지산 鬪爭의 시기로 보는 北韓은 우리의 近代的인 民族史를 60餘年史로 短縮시키고, 金日成의 祖上들이 큰 民族運動이나 한 것처럼 描写함으로써 家族史, 즉 족보와 같은 것으로 歪曲 格下시키고 있다.

다섯째, 우리 民族의 獨立運動史 특히 1930年代 이후의 역사를 金日成과 그의 삼복 부하들의 「鬪爭史」로 날조하여 愛國先烈들을 모독하고 있다.

예컨대 3.1運動은 民族代表 各階各層 33人의 主動이 되어 獨立宣言文을 작성 낭독하고 세계만방에 宣布한 순수한 抗日民族運動임에도 불구하고, 北韓에서는 3.1運動에 대해서 소련의 10月革命의 影響에서 일어난 運動이라고 規定하고 있는가 하면 「國民會」라는 것을 조작하여, 3.1運動을 促進시킨 原因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8.15解放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엄연히 우리 民族의 獨立鬪爭과 聯合軍의 승라에서 얻어진 結果인데도 불구하고, 金日成의 抗日鬪爭으로 얻진 結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1950年代에서는 소련을 解放의 恩人이라고 치켜세웠다가 1970年代에 와서는 이를 번복하여 8.15解放은 金日成의 抗日鬪爭으로 얻어진 所産이라고 규정한 점등은, 그들의 歷史 날조가 얼마나 組織的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史實과 歷

史的 人物評價등에 있어서 北韓 共產集團은 우리 民族史를 그 原
型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修正·歪曲하였다.

7. 南北韓 社會問題의 比較

가. 社會的 逸脫行爲

社會文化生活은 反復的 持續과 力動的 창조, 그리고 理想的 目標와 現實的 條件등 諸側面의 均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側面은 항상 相互補完 내지 重疊關係에 의하여 조화적으로 並存하는 것이 아니라 歷史的 變動과 더불어 不均衡이나 不一致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近代歷史의 社會變動은 觀念的으로 생각하는 理想的 共產主義와 經驗的으로 展開되는 現實的 共產主義 사이에 현격한 편차가 內在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었다. 이러한 전제는 특히 社會的 逸脫問題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 즉 理想的인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存在할 수 없는 犯罪, 소년비행을 비롯하여 人間疎外, 官僚主義, 大衆化現象, 形式主義, 「부르조아」思想,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등이 現實的 社會問題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現象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解決되지 못한채 그대로 殘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北韓의 犯罪類型을 大별해 보면,

첫째, 人身侵害에 관한 犯罪行爲가 특히 많다. 즉 청년들의 暴力事件, 女性의 社會進出과 戀愛·結婚에 대한 党的 統制등으로 빚어지는 파렴치범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党幹部와 協同農

場의 幹部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北韓의 体制的 矛盾을 反映하는 証拠가 된다.

둘째, 經濟犯이다. 制度上으로 사유재산제가 철폐되고 個人의 企業活動이 全面的으로 禁止되었다고는 하나 人間의 所有慾이 消滅되는 것은 아니며 더우기 衣食住가 제대로 充足되지 못하는 實情이고 보면 物慾充足을 위한 逸脫的 충동이 불가피한 것이다.

國家財産의 橫領 및 管理 疎忽을 비롯하여 절도, 양곡의 암거래 및 橫領, 品貴商品의 不正流出, 허위보고에 의한 약취, 不當利得의 착복, 근로기피 등이 發生하고 있다.

세째는 政治犯, 思想犯이 높은 比重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表 18>에 의하면 1960年 以後 越南한 歸順者中 62名을 선정, 이들에게 越南直前 自己 주변에서 發生했던 犯罪事件으로서 記憶에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을 15 ~ 20件씩 진술하도록 하여 이를 類型別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947件은 朝鮮勞動黨이 소위 犯罪로 規定하여 처벌한 事件基礎 資料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中에서 思想不純으로 처벌된 事件이 320件으로 제일 많고, 性犯罪는 179件으로 그 다음이며, 政治的으로 뚜렷한 犯罪가 된다고 認定된 犯罪, 즉 政治犯이 109件이고, 또 주로 政治的 理由로 脫出을 기도했다가 실패한 脫出犯도 79件이나 되었다.

여기서 性犯罪를 除外하고는 기타의 260件도 黨的 課業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政治思想犯으로 볼 수 있는 것은 全体 不滿事件中 768件으로 81.1%나 차지하고 있다.

< 表 18 > 北韓犯罪型 및 處理現況

犯罪種類	件 數	全体比率	備 考
思想不純	320	33.8	確信犯이 아님
性 犯 罪	179	18.9	
政 治 犯	109	11.5	確信犯
脫 出 犯	79	8.3	確信犯 (政治的 自由)
其 他	260	27.5	
計	947	100.0	

資料：国土統一院，北韓住民不滿要因分析 (1972.9)

以上과 같은 調查結果는 한가지 事例에 不過한 것이지만 이는 共産党的 橫暴와 一人獨裁를 維持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者들을 모조리 政治犯으로 몰아 치우는데서 結果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共産主義에 反對하여 체제에의 반항심을 갖고 体制離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음을 이 자료는 암시해 주고 있다.

즉 韓國에 있어서는 犯罪가 經濟의 急速한 發展과 社会關係의 複雜性에 기인하는 면이 있는데 反하여 北韓에서는 政治思想的인 면에서 불만이 많고 이에 따라 犯罪도 增加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現實的 條件에 비해서 共産主義者들은 왜 犯罪를 저지르

고, 무엇이 反社会現狀의 主要原因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첫째, 그들은 소위 「自由世界」의 매력에 대한 선전과 個人主義的 見解의 전파가 사람들에게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다.

둘째, 社会的 逸脫을 父母의 責任으로 돌리고 있다.

셋째, 犯罪原因을 犯罪者 자신의 「퍼스넬리티」에다 전가시키고 있다. 그것은 公式的인 教育과 文化水準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社会가 提供하는 모든 機會를 進취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元來 나쁜 性品の 所有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째, 社会主義體制가 지니는 潛在的 機能과 關聯해서 마르크스主義者들은 이를 「資本主義的 殘滓」라던지 「 부르조아의 思考의 遺制」로서 說明하려는 一種의 文化지체론(Cultural lag)으로 일관한다. 共產主義國家의 社会科學者들은 「共產國家에 있어서 社会犯罪은 그것이 社会主義體制의 특질에 의해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靑少年 非行의 기초를 이루는 현상과 과정은 經濟的 이데올로기의 文化的 및 日常的인 과거의 殘存物의 影響에 의한 結果이며, 그것은 社会的 物質的 資源의 발달과정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北韓의 社会的 逸脫에 대한 金日成의 思考도 이상과 같은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金日成은 反社会的 作風의 manifestations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다.

즉 封建的 부르조아의 思想의 殘存, 幹部들의 革命的 經驗의 不足, 幹部들의 大衆領導方式의 未숙, 党的 幹部政策의 欠陷, 党的 그릇된 事業作風에 대한 鬭爭不足 등 側面에서 社会的 逸脫의 원천을 찾고 있다.

以上の 여러가지 側面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實際의 經驗的 水準에 있어서는 兩體制間에 있어서 이러한 同一性이 놀랄만큼 많이 存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 社会學者들은 비행을 그들의 社会와는 本質적으로 相關없는 別個의 성질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見解는 때때로 共產主義 社会自體의 矛盾을 스스로가 暴露하는 結果를 초래케 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以上과 같이 모든 逸脫的 行動의 根原을 「낡은 社会秩序가 破壞된 연후에도 殘存하는 過去의 태도의 殘滓」라고 假定하는 殘滓理論 내지 文化遲滯論을 고집할 경우 여기에는 큰 難點을 스스로 내포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論理는 보다 높은 世代에는 適用될지 모르겠으나 젊은 世代에 그것을 適用하려고 한다면 既成의 老世代가 이 殘滓를 새로운 靑少年世代에게 전승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成立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困難한 궁지로 몰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 社会에 있어서 우리가 確認할 수 있는 어떠한 「社会逸脫」의 要因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共產體制의 社会的 環境에서 연유한 產物일 것이며, 이런 面에서 社会犯罪는 하나의 超體制的 現象이라는 點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社会的 不条理 現象

社会的 不条理現象 또한 南北韓의 社会体制的 性格을 그대로 反映한 것이다. 그 때문에 社会安定性을 沮害하는 社会不条理現象을 測定하는 問題도 結局은 直接的 相互比較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社会가 지닌 社会的 不条理의 特性은 社会体制的 文脈속에서 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北韓의 경우, 그 동안 그들이 採択한 政策的 方向이라든가 政策 決定過程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당면한 反社会主義的이고 反社会的인 諸問題点에 대해 단편적이나마 繼續적으로 指摘해 왔다.

1973年 “새 党証再交付事業”, 1975年 “工業熱誠者大会”, 1977年 「社会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와 새로운 「土地法」등에서 그들의 当面課業을 強調하는 가운데서 指摘된 社会的 不条理의 양상들은 그 代表的 实例라 하겠다.

이러한 事例에서 北韓이 처한 社会的 不条理와 不安定の 素地를 간추려 보면,

- ① 金日成 教示 學習에 대한 기피
- ② 党組織生活의 태만 및 외면
- ③ 黨員과 勤勞者의 消極性 및 熱誠의 不足
- ④ 勞動嫌惡와 勞動忌避, 그리고 勞動規律의 違反
- ⑤ 國家財産의 消費와 流用, 그리고 資材濫用
- ⑥ 技術신비주의, 보수주의, 經驗主義, 수정주의, 자본주의사상, 封建유

교사상 등 “남은 思想殘滓”의 지속

⑦ 官僚主義, 주관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事業作風

⑧ 青年 「인텔리」의 反社會主義的 行動과 人間疎外 등의 現象이 그것이다.

北韓 스스로가 提示한 以上の 諸現象은 오늘날 北韓社會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모든 住民들의 內面的 社會意識을 그대로 反映한 것이며, 이는 社會的 不安의 素地로서 깊이 作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社會問題의 諸要因

이러한 現實的 狀況에서 北韓社會가 當面하고 있는 社會不安의 要因을 보다 科學的 立場에서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個人偶像化政策이 지난 內在的 矛盾인 것이다. 金日成은 個人崇拜 - 個人偶像化 - 個人神格化 - 家系偶像化의 政策을 이미 30餘年에 걸쳐 强行하여 왔으며 近者에는 “代를 이어 忠誠하자”는 구호 밑에 後繼體制의 基盤構築에 血眼이 되어있다. 그런데 偶像化體制란 根本적으로 個人的 忠誠을 그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排他的 概念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北韓의 경우에는 民族史의 날조와 金日成思想의 虛構, 個人偶像化의 기반은 더욱 취약하고 架空的이다. 이런 면에서 北韓은 金日成에 대한 懷疑와 不信을 자아낼 수 있는 體制的 「딜레마」를 스스로가 造成시

켜 왔던 것이다.

둘째는 價值指向의 非現實性이다. 北韓은 그동안 「앞으로 成就될 未來像」에 대한 여러가지 “希望的” 약속만을 提示해 놓고 住民들에게 現在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未來에 대한 約束이 現實적으로 實現不可能한 것이라는 점이 점차로 立証됨에 따라 住民들이 받는 心理的 動搖와 社会的 不滿意識은 더욱 심각하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北韓은 그동안 欲求調節을 위한 統制政策을 強力하게 펴왔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7個年計劃, 6個年計劃 등을 遂行하는 과정에서, 勞力英雄과 目標超過達成만을 선동한 나머지 個人的 欲求水準은 社会的 機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여기에 住民들의 期待挫折感이 增大하게 되었고, 그러한 挫折意識이 反社会的 抵抗으로 發展된 것이다.

세째는 人間本性을 말살하려는 “共產主義式 人間改造” 政策이다. 元來 人間이란 새로운 價值創造의 主体로서 物質的 條件까지도 能動的으로 變化시킬 수 있는 創造的 힘과 開拓의 精神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自由世界의 共通된 見解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러한 人間의 本性을 전혀 外面하고 人間의 精神을 物質의 反映 또는 模寫로 보기 때문에 그 能動성과 創造성은 소위 “黨의 決定” 혹은 “首領의 敎示”에 充實하려는 努力에 依해서만 發揮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非人間的 人間觀에 따라 北韓은 1976年 6月 “어린이 保育敎養法”을 採択한 것이다. 그들은

모든 어린이들을 이 世上에 태어날때부터 託兒所 및 幼稚園에 集團收容케 함으로써 家族의 人間的 關係를 단절하고 民族傳來의 傳統的 家族분위기와 家族의 社會化 기능을 한層 더 마비시키는 措置를 敢行하고 있다. 北韓의 動物的인 人間鑄造方法은 結果적으로 住民의 반발심을 사게 되었고 社會不安의 要因으로 작용한 것이다.

끝으로 階層構造와 社會的 移動의 硬直性에서 제기되는 問題이다. 즉 “北韓은 階級的 對立이 없어졌다”는 宣傳과는 달리 現實적으로는 새로운 階級이 形成되었고 階層變動을 일으킬 정도의 社會的 移動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階級構造는 抵抗的 諸要素를 政治적으로 철저히 除去하는 權力統制의 장치로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위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實現한다는 명분하에 30여년간에 걸쳐 자행해 온 階級敎養, 階級政策은 結果적으로 革命精神, 革命家를 養成했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特權階層만을 形成시켜 놓았고, 나아가 이러한 特權的 地位를 繼承시키려는 政策過程은 대다수의 住民들로 하여금 挫折, 不安, 疎外의 心理를 길러 놓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社會는 이러한 北韓實情과는 전혀 상이한 側面에서 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韓國은 1960年代 이후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 推進으로 自立經濟의 基盤造成과 더불어 近代의 產業社會를 指向하여 急速度로 成長하였다.

社会文化的 側面에서 볼 때 어느 社会를 莫論하고 近代化, 工業化, 都市化된다는 良機能的 變數는 반드시 이에 부수되는 逆機能的 變數가 隨伴되고 있으며 이러한 兩者間의 調節·調整의 問題가 오늘날 하나의 심각한 國家的 課業으로 제기된 것이다. 특히 開發途上 國家의 경우라든가 急速한 工業化過程에 있는 나라일수록 이러한 現象이 더욱 問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韓國은 經濟力의 急速한 成長과 이에 따른 靑少年 問題, 社会的 隔差, 社会的 不条理등을 國家安保의 次元에서 하나의 主要한 社会的 課題로 삼고 있는 것이다.

8. 要約과 結論

元來 同一民族에게는 同質의 文化가 있을 뿐이다. 言語가 같고 같은 思考方式, 비슷한 行動樣式을 가지고 있다. 南北韓住民들은 해방직후까지는 同一한 社會文化를 가지고 하나의 生活共同體로서의 同質性과 連帶性이 있었다. 그러나 南北分斷이라는 悲劇은 서로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政治體制, 經濟體制를 형성하고 서로 遊離된 生活圈을 形成케 하였다. 이로서 南北韓 사이에는 異質的 社會文化를 부식하게 되었고 급기야 民族的 同質性마저 破壞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우리들은 社會體制의 구성원리와 그 體制 維持裝置를 전혀 달리하는 南北韓間의 相異한 두 社會文化를 諸般 既存資料의 制限된 範圍內에서 比較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南北韓間에는 이제 社會文化的 類似性보다는 特異點이 支配的으로 作用하고 있으며 兩側間의 異質化의 정도가 더욱 심화·고착되고 있다는 점을 發見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南北韓比較에서 發見된 몇가지 차이를 整理하고 그 意味를 해석해 보기로 하자.

첫째, 基本體制에 있어서, ①韓國은 窮極的으로 社會福祉向上을 추구하는 多元社會인데 反해서 北韓은 金日成唯一思想이 支配하는 全體主義的 劃一社會를 강제하고 있다. ②韓國은 個人能率志向的인 社會組織形態를 추구하고 있으나 北韓은 集團主義原則에 의거, 相互

競争을 통한 集團能率의 向上을 재촉하는 組織的 動員社會를 이룩하고 있다.

둘째 生活樣式에 있어서 異質化가 民族同質性的 基準인 言語, 風習 등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形成되고 있다. 韓國이 韓民族의 同質性을 그대로 繼承, 發展시키고 있는 反面, 北韓에서는 이를 改造, 捏造, 말살해 가는 과정에서 모든것을 「革命性」, 「党性」, 「鬭爭性」에 결부시키고 있으며 중국에 가서는 그들은 혈연의 同質性마저 부인할지도 모른다.

셋째, 家庭生活에 있어서 韓國은 子女에게 人間다운 情緒를 배양시켜 건전한 人格을 갖춘 生産的인 社會人의 養成을 추구하는 반면, 北韓은 家庭不在의 狀態下에서 學校와 社會團體에 의한 社會主義的 教育方法을 通하여 共產主義的 人間形成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教育에 있어서 韓國은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완성하고 自主的 生活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向上을 具備하여 民主國家發展에 奉仕하며 人類共榮의 理想實現에 기여케 (教育法 1條) 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人格形成의 基本的인 教育을 外面하고 鑄造化된 共產主義的 人間을 양성하여 共產革命의 道具로서 活用하려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은 人類共榮의 精神에도 背馳될 뿐만 아니라 世界平和에 대한 挑戰者를 양산하게 된다.

다섯째 韓國에 있어서는 宗教의 自由가 保障되고 國民의 77%以上이 宗教活動을 함으로서 基督教의 「사랑」, 천주교의 人類에 대한 「박애」, 불교의 「慈悲」, 유교의 「仁」등 諸宗教의 敎理는 韓國

人에게 무엇보다도 「人間다운 人間」으로서의 가치의식을 심어 주는데 크게 기여하는데 비해, 北韓은 「宗教는 阿片」이라는 共產主義哲學에 따라 精神的인 宗教가 唯物論的 共產主義로 代替되었고, 더우기 金日成唯一思想으로 탈바꿈하였으며 無宗教狀態下에서 共產主義를 盲信케 함으로써 非情的이고 冷血的인 動物意識만을 一方的으로 形成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文化活動에 있어서도 北韓은 「매스컴」, 文學, 藝術 및 學術등을 體制維持手段으로서 活用하고 있으며 客觀性, 藝術性을 부인한다.

일곱째, 社會變動과 관련하여 南北韓社會는 다같이 體制的 特性에 상응하는 諸社會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즉 南北韓社會에 있어서 犯罪, 비행, 社會的 不条理, 人間疎外 등 社會逸脫現象은 社會的 緊張과 心理的 不滿을 야기함으로써 社會文化的 再組織化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相異點과 類似性을 전제로 하여 評價해 볼 때, 北韓에 있어서 文化的 目標의 齊一性, 義務教育制度의 擴大, 靑少年技術教育의 強化, 乳兒教育의 系統化 및 勞動力의 動員能力 등은 社會文化的 강한 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全體主義的 動員體制를 완비한 北韓은 勞動力을 最大限 榨取, 最大限 動員하는 대신 勞動力의 單純再生産을 위한 최소한의 人間生存條件에 대해서만 制度的 保障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 重要하다.

韓國의 경우, 人力面에서 또 物量面에서 그 資源이 豊富하고 質的 수준도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1960年代 以後의 高度成長에 따른 生活水準의 向上도 특기할 사실이다. 그러나 急速한 社會變動過程에 수반하는 價值體系의 混在, 社會文化的 隔差, 社會的 逸脫行動, 社會的 不條理 등 社會安定을 沮害하는 要因들이 아직도 그 解決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諸般問題狀況은 바꾸어 말하면 人的, 物的, 社會的 資源 등 社會文化的 潛在力은 豊富하나 이를 目標追求的 立場에서 社會文化的 目標(또는 國家目標)와 관련시켜 최대한으로 活用할 수 있는 社會組織化作業이 均衡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알해준다.

결국 한나라의 社會文化發展이란 窮極的으로 각기 體制原理에 따라 各社會가 充足해야 할 諸般必要條件을 어느 정도 充足하고 있느냐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다. 이것은 社會文化的인 面에 있어서의 潛在的 諸要素들이 國家目標를 指向하여 相互有機的인 均衡과 조화·조정을 이룩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社會文化的 諸要素들간의 調和·調整이라는 面에서 보면 北韓이 오히려 앞서 있다. 그러나 人爲的이고 閉鎖的인 調整을 강요해 온 北韓에서는 個人偶像化, 民族史의 날조, 民族文化 말살, 人間性否定, 硬直的 階級政策, 統制手段의 一方的 強化 등 金日成體制的 諸矛盾이 그러한 强압적 調整을 어느정도 지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韓國은 그 絶對 優位의 物量的 資源, 技術水準, 그리고 經濟發展段階에 있어서 이미 北韓과는 그 次元을 달리하는 앞선 段階에 있다.

이에 상응하여 앞으로 時間이 흐르면 흐를수록 南北間의 社会文化的 異質化와 同時에 그 力量의 隔差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同時에 北韓側의 民族史的 正統性의 拒否와 繼續되는 民族文化抹殺政策에서 起因되고 있는 南北韓의 異質化現象은 날이 갈수록 더욱 深化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民族統一이라는 觀點에서 볼때 全体韓民族의 悲劇이 아닐 수 없다.

